

노르웨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 1
-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2
- 주요인사 / 5
- 외교관계 / 6
- 주한주재 국기관 / 7
- 한국과의 주요이슈 / 8

II. 경제

- 경제정책 / 8
- 최신 경제 동향 및 전망 / 10
- 주요 산업 동향 / 12
- 정보조사 자료원 / 17

III. 경제무역통계

- 거시경제 통계 / 18
- 무역통계 / 19
- 투자통계 / 22

IV. 출장가이드

기후 / 24
시차.근무시간 / 25
도량형 / 26
출입국.비자 / 27
환율.환전 / 28
물가정보 / 29
교통.통신 / 32
호텔.식당 / 35
관공서 관행 / 38
공휴일 / 40
여행시 유의사항 / 41
유용한 연락처 / 43
관광명소 / 44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47
수입규제제도 / 48
관세제도 / 50
주요인증제도 / 51
지적재산권 / 51
소비자보호제도 / 52
교역관련 국가기관 / 53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54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57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58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58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60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60
운송 / 61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64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64

우리기업 투자동향 / 67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67

투자인센티브 / 69

타당성조사 / 70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71

입지선정 / 74

공장 설립 / 75

투자관련 정부기관 / 76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77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77

조세제도 / 81

외환관리 / 84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84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노르웨이왕국 (The Kingdom of Norway, Kongeriket Norge)
위치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쪽 - 위도: 북위 57도 57분 - 71도 11분 - 경도: 동경 04도 29분 - 31도 10분
면적	385,155천 km ² (남한면적의 약 4배)
기후 (오슬로중심)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온난한 기후 - 연평균 기온 6.9도 - 여름 최고 기온 28.2도, 7월평균 16.4 - 겨울 최저기온 -19.7도, 1월평균 -4.3 봄, 가을의 온난한 시기에 잦은 강우현상으로 저온 발생
수도	오슬로 (Oslo)
인구	4,621천명 (2005.7.1일 기준)
주요도시	Oslo(530천, 메트로기준 76만) Bergen(239천), Trondheim(156천), Stavanger(113천)
민족	노르웨이족(99%), 사미족(약 4만 명, 소수민족)
언어	북게르만 계통의 노르웨이어 (영어소통 원활)
종교	루터 복음교 (95% 이상)
건국	1814년 (제헌, 덴마크로부터 독립) 1905년 (스웨덴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Harald V세 (국왕, 1991. 1.21즉위)
행정수반	Mr. Jens Stoltenberg(2005.10.17 - 현재)

나. 경제지표(2005)

GDP	\$2,928억 (경상가격 기준)
경제성장률	2.5%
1인당GDP	\$63,959 (2006.1 기준)
실업률	4.6%
물가상승률	1.6%
화폐단위	Norwegian Krone (Nkr, NOK)
환율	1US\$ = Nkr6.44 ('2005년 평균환율)
산업구조	서비스(59.2%), 제조(20.1%), 원유.가스(12.5%), 건설(6.3%), 농림수산업(1.9%)
교역규모	US\$1,039억(수출), US\$549억(수입) *상품교역(서비스교역 제외)
교역품	(수출)원유.천연가스, 운송기기, 수산물, 금속제품, 화학제품 (수입)선박,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차량, 전자제품, 화학제품

다. 한-노르웨이 관계

국교수립	1959년 (국교수립이전에도 1950년 한국전 참전, 1956년 한국의료지원을 위한 메디탈센타 설치 운영 등 우호적 관계 유지)
체결협정	특허.의장 및 상표권보호('65), 사증면제('69) 이중과세방지('82), 경제.기술(82),해운협정(가서명,'83), 석유.의류('84) 제2차 한.노르웨이 경제공동 위원회(2002),수산협정(2002), 한-EFTA 자유무역협정('05)
교역규모	- 한국의 대노르웨이 수출 378백만 불, 수입 610백만 불 (2002년) - 한국의 대노르웨이 수출 739백만 불, 수입 538백만 불 (2003년) - 한국의 대노르웨이 수출 323백만 불, 수입 560백만 불 (2004년) - 한국의 대노르웨이 수출 468백만 불, 수입 639백만 불 (2005년)
교역품	선박, 자동차, 의류 및 석유제품, 고무제품 영상기기, 합성수지 (수출) 석유제품, 선박기자재, 니켈제품, 원동기 및 펌프 기계요소, 어류 (수입)
교인	280명 내외, 장.단기 체류자 70명 내외 주요인사교류 - 1979. 5 : 최각규 상공부장관 노르웨이 방문 - 1983. 9 : Asbjorn Haugstvedt 상무해운장관 한국 방문 - 1985. 6 : 금진호 상공부장관 노르웨이 방문 - 1989. 5 : 한승수 상공부장관 노르웨이 방문 - 1992. 9 : Johan J. Holst 국방장관 한국 방문 - 1998. 6 : 박태영 산자부장관 노르웨이 방문 - 2000.12 : 김대중 대통령 2000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 방문 - 2001.12 : 김대중 대통령,노벨상 100주년 기념세미나 참석 - 2002. 1 : Kjell Magne Bondevik총리 국민 방한 - 2002. 1 : 제2차 한.노르웨이 공동경제위원회 개최 - 2004. 5 : 김대중 전대통령 노르웨이 방문

자료원: Statistics Norway(www.ssb.no)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가. 행정부

2005년 9.12 총선에서 노동당 주도 야권연합이 승리함으로써 현 중도우파 연립 정부가 퇴진하고 Mr. Jens Stoltenberg총리의 중도 좌파 내각이 10.17 출범함

과거 다수당으로 단독으로 집권해 왔던 노동당이 금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정권 확보를 위해 사회주의당 좌파당 및 중앙당과 연정을 구성함에 따라 3년간 국정 운영의 원활한 공조여부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음

포퓰리스트 성향의 진보당이 우익을 대표하는 원내 제2당으로 부상한 것이 주목되는 현상인바,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 여야간 노선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 신정부의 정책전망

○ 대외정책

- NATO 및 EU와의 협력을 공히 중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예상되지 않으나 NATO차원의 이라크 파견 병력 존치 여부 및 EU Battle Group 참여 등에 있어서는 다소의 입장변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EU가입문제에 대해서는 보수당 등 연정 파트너간 입장차이가 뚜렷하여 공조우선 정책상 당분간 이슈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WTO 등 통상분야 관련 종래보다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나 교역대상국으로서 한국 등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증대할 것으로 전망

○ 국내정책

- 경제안정 추구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적극적 확대재정을 통한 고용확대에 중점이 주어짐과 함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책 도입도 예상
- Statoil 등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속도는 늦추어질 것으로 보이며 노인층 등 대상의 복지정책 및 교육정책 및 교육개선책이 여야간 핵심적 정치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보임
- Barents 해역 등에서의 자원개발을 둘러싸고 사회주의 좌파당 및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연정을 주도하는 노동당의 개발입지 입장이 확고함에 따라 개발프로젝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노동당(Labor Party) 수상 및 9개 부처

- Cultural & Church affairs, Defence, Quality & Consumer affairs, Fisheries & Coastal affairs, Foreign affairs, Health & Care Services, Justice, Labor & Social affairs, Trade & Industry

○ 중앙당(Centre Party) 4개 부처

- Agriculture & Food, Local government & Regional development, Petroleum & Energy, Transport & Communication

○ 사회주의좌파당(Socialist Left Party) 5개 부처

- Development & Cooperation, Environment, Finance, Knowledge & Growth, Renewal

나. 사법부

노르웨이의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미국 대법원과 같은 막강한 권한은 없음. 사법부는 3심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의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관은 내각의 제안을 받아 국왕이 임명하는데 화의법원은 각 지방별로 선출되는 위원회(Board)가 심의 결정함

- 대 법 원 : 오슬로에 소재하며 대법원장과 17명의 대법관으로 구성.
- 항소법원 : 주요지방별로 5개 법원
- 지방법원(민.형사재판 관할) 및 화의법원(민사사건 심결)이 1심을 맡으며 기타 특별 법원으로 중재원, 노동심판법원, 군사법원이 있음.

다. 의회

정통 영국식 의회정치를 실시 중인데 16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Storting)는 단원제이지만 운영면에서는 양원제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즉 신규 법안의 심의를 충실히 하거나 중요 사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회내부의 선거에 의해 상원(Lagting)과 하원(Odelsting)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의회좌석을 별도로 배치하거나 신분, 권한상의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님

상원은 전체의석의 1/4인 41명, 하원은 나머지 124명으로 이루어지며 상원은 의원 총회에서 선출함. 노르웨이 의회의 특이한 전통은 심의안건에 대해 찬반투표 보다는 정당간 협의를 통한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의회의 심의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요되며 상호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안건의 경우 의회통과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라. 선거 제도

의원선거는 매 4년마다 실시되는데 현 중앙의회 및 정부는 2005년 9월에 실시된 중앙의원 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음. 또한 지방자치체의 지방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중간해(2003년, 2007년 등)에 실시됨. 2003년도 지방의회 선거는 9월 15일에 실시되었으나 투표율이 역사상 최저치인 58.6%에 그쳤음. 노르웨이 중앙의회(Storting)는 선거에 의해서만 구성되며 누구도 해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정기 선거 년도에만 선거가 이루어짐

국민투표에 대한 투표권 부여원칙은 선거 년도 말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과 10년 이상 노르웨이에 거주한 사람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짐. 그러나 군복무를 대신한 공익요원 및 해외 근무자는 투표권이 없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노르웨이에 3년 이상 거주한 납세대상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됨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선거구에서 4-15명씩 총 169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형태를 띄고 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각 정당이 전국의 선거구별로 입후보자 리스트를 발표하고 일반 국민은 동 입후보자 리스트의 인물들을 검토한 후 정당을 선택해 투표를 하고 의원을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하는 일종의 비례대표제 형식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의원은 161명이며 나머지 8명은 선거 후 주 별로 선거결과에 따라 배분함

마. 정당제도 및 현황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현재 7개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고 있음. 2005년 9월 12일에 실시된 총선에서 나타난 정당별 득표율은 노동당 32.5%, 진보당 22.1% 등 야당지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도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정당별 확보 의석수 및 득표율은 다음과 같음

정 당	의석수		득표율(%)	
	'01년	'05년	'01년	'05년
Labour Party (노동당)	43	62	24.3	32.5
Conservatives(보수당)	38	23	21.2	14.3
Progress Party(진보당)	26	37	14.6	22.1
Social Left Party(사회좌파당)	23	15	12.5	8.7
Christian Democrat Party(기민당)	22	11	12.4	6.9
Center Party(중앙당)	10	11	5.6	6.4
Liberal Party(자유당)	2	10	3.9	6.0
기타 (무소속)	1	0	3.5	1.2

3. 주요 인사

□ 정부각료(2006. 8월 기준)

- 농업.식품부장관(Agriculture & Food) : Terje Riis Johansen (중앙당, 37세)
- 종교.문화부장관(Cultural & Church Affairs) : Trond Giske (노동당, 38세)
- 국방부장관(Defence) : Anne-Grete Strom-Erichsen (노동당, 여성, 55세)
- 환경부장관(Environment) : Helen Bjornoy (사회주의좌파당, 여성, 51세)
- 아동.평등부장관 (Children & Equality) : Karita Bekkemellem (노동당, 여성, 40세)
- 재무부장관(Finance): Kristin Halvorsen (사회주의좌파당, 여성, 45세)
- 해양수산부장관(Fisheries & Coastal affairs): Helga Pedersen (노동당, 여성, 32세)
- 외무부장관(Foreign Affairs) : Jonas Gahr Store (노동당, 45세)
- 보건부장관(Health & Care Service) : Sylvia Brustad (노동당, 여성, 38세)
- 법무부장관(Justice & the police) : Knut Storberget (노동당, 41세)
- 교육연구부장관(Education and Research): Oystein Djupedal (사회주의좌파당, 여성, 45세)
- 노동.사회부장관(Labour & Social Inclusion) : Bjarne Hakon Hanssen (노동당, 42세)
- 지방자치개발부장관(Local Gov't & Regional development): Aslaug Haga (중앙당, 여성, 45세)
- 석유에너지부장관(Petroleum & Energy) : Odd Roger Enoksen (중앙당, 51세)
- 혁신. 행정부장관(Government administration & Reform) : Heidi Grande Roys (사회주의좌파당, 여성, 38세)
- 통상산업부장관(Trade & Industry) : Dag Terje Andersen (노동당)
- 교통.통신부장관(Transport & Communication) : Liv Signe Navarsete (중앙당, 여성, 47세)

□ 중앙은행 총재(Governor) : Mr. Svein Gjedrem

- 의회 주요인사
 - 의회의장(Storting): Mr.Thorbjorn Jagland (노동당)
 - 의회부의장: Mr.Carl I. Hagen
 - 상원의장(Lagting): Mr.Inge Loonning
 - 상원부의장: Mr.Joe Lilletun
 - 하원의장(Odelsting): Mrs.Berit Broorby
 - 하원부의장: Mr.Olav Gunnar Ballo

□ 기타 주요인사

- Mr. Jan Egeland
 - Under-Secretary-General for Humanitarian Affairs and Emergency Relief Coordinator in UN
 - 2003.6월 6일 : UN 부사무총장 취임
 - 2001-2003 : 노르웨이 적십자사 총재
 - 1999-2002 : 콜롬비아 Secretary-General 특별 고문
 - 1990-1997 : 노르웨이 외무부 차관

4. 외교관계

가. 외교 노선

노르웨이 정부의 외교노선은 세계평화와 국가간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국제 인권증진과 민주주의 이념을 옹호하는데 기본을 두고 있음. 특히 노벨 평화상 시상국 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각종 행사개최에 적극적이며 억압 받는 소수인권의 보호를 위해 난민을 받아들이는데도 매우 적극적임. 또한 이라크 전쟁 시에는 UN의 결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인도적인 지원활동은 지속 전개 함으로서 중도적인 외교노선을 유지하는데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최근에는 제3세계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확립에도 매우 지대한 관심과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음. 1952년에는 북구 이사회를 설립 하는데 참여 함으로써 북구제국간 협력활동도 강화하고 있음. 유엔 회원국으로써 유엔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이며, 새롭게 떠오르는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강화를 위해 아시아 전략 (Asia Strategy)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현재 노르딕 국가(스칸디나비아 제국 및 아이슬란드)중 아이슬란드와 함께 EU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스웨덴, 덴마크의 유로화 가입 국민투표에 영향 받아 EU가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여론이 다시 일고 있음. 2004년 3월 최대 야당인 노동당 당수인 Mr. Stoltenberg (현수상)의 공식적인 EU가입 지지발언을 기점으로 정가에서 EU가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노동당과 보수당이 적극적인 가입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중앙당과 사회좌파당 등은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기민당은 당 내부 의견이 찬반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임. 2003년 9월 14일 스웨덴의 유로화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가 도입반대로 확정됨에 따라 노르웨이의 EU가입 반대의견이 다시 힘을 얻기도 하였음. 아직까지 농어민들의 EU가입 반대여론이 강하게 남아있을 뿐 아니라 2005.9월 출범한 현정부에서는 EU가입을 서두르지 않고 있어 EU가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간 환경보호 차원에서 러시아 등을 포함한 바렌츠 협력기구(Organization of Barents Cooperation)와 발틱해 연안국 이사회(Council of Baltic Sea States)를 구성하여 운영중임. 1992년 러시아와 환경보호 협정을 맺었고, 1998년 5월에는 핵폐기물 보호에 대한 양국간의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양국 국경지역의 콜라반도(Kola Peninsular)내의 핵폐기물 처리가 노르웨이 정부의 가장 민감한 사항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북극권 지역에서의 어업권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인 현안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바렌츠해(Barents Sea)에서의 해상 한계선 문제와 스발바드 섬의 국경선 및 어업권문제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나. 지역협력체 참여 정도

1945년 UN에 가입, 1972, 1994년 두 차례에 걸친 EU가입(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EU회원가입이 좌절되었고 그 대안으로 EMU, EEA를 통해 EU회원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스웨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인근국들이 모두 EU에 가입하였고 국민들의 관심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의회 내에서 EU 가입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밖에 99년 11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참석한 중동평화 정상회의를 오슬로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평화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WHO나 WTO 등의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임. Schengen 협약에 준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EU국가와의 국경 통제를 해제하였으며 지역방위 협력체인 NATO, WEU, OSCE에 가입한 상태임

다. 주요 국제기구 가입현황 (2006.8 기준)

ADB(African Development Bank), BAD, ADB(Asian Development Bank), BAD, BIS, BRI, OCTI, CCAMLR, CGIAR, CE, CE, CBSS, CEB, EDI, IDE, EPPO, OEPP, EAES, SEEA, EBRD, BERD, ECAC, CEAC, EUROMET, EUROFIMA, EUROFIMA, ECMT, CEMT, CEPT, COST, ECP/GR, EEA, EEE, E?, EUFORGEN, EFTA, AELE, EMBL, OEEPE, CERN, EUMETSAT, EUROCONTROL, ERO, ESA, ETO, EUTELSAT, FATF, GAFI, FAC, FAO, HCOPII, CODIP, IDB, BID, IOC, COI, OTIF, IALA, AISM, IAPH, AIP, IAEA, AIEA, IBRD, BIRD, IBSC, IBE, BIE, BIPM, ICSID, CIRDI, ICCROM, ICAO, OACI, ICCO, ICO, OIC, UT, ICES, CIEM, ICJ, CIJ, ICPO-Interpol, OIPC-Interpol, IDA, AID, IEA, AIE, BIE, IFC, SFI, FAD, FIDA, IGC, IHO, UNIDROIT, OHI, IIAS, IISA, International IDEA, IIR, IIF, IJO, ILO, OIT, ILZSG, IMO, OMI, INMARSAT, mobile, IMF, FMI, INRO, OICN, INSG, OIE, OIE, IOM, OIM, ISO, OIML, IRCA, AICCF, ISTA, AISS, ISSA, AISS, ITU, UIT, INTELSAT, ITC, CCI, ITTO, OIBT, IUCN, UICN, UIC, IWC, CBI, NC, NR, NMR, NDF, NEFCO, NI, NI, NIB, NOPEF, NOPEF, NAMMCO, NASCO, OCSAN, NATO, OTAN, NEAFC, CPANE, NAFO, NSG, NEA, AEN, OECD, OCDE, OSCE, OSCE, OSSE, OSCOM, PARCOM, PCA, CPA, PIANC, AIPCN, NSK, CITES secretariat, CITES, UN, ONU, FN, UNICEF, UNCTAD, CNUCD, UNDP, PNUD, ECE, CEE, UNESCO, UNIDO, ONUDI, UPU, UPU, WFP, PAM, WHO, OMS, WIPO, OMPI, WMO, OMM, PIARC, AIPCR, WTO, OMC

5. 주한주재국기관

- 주한 노르웨이대사관 (Royal Norwegian Embassy)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58-8
 - 전 화 : 795-6850/52
 - 팩 스 : 798-6072
 - e-mail : emb.seoul@mfa.no
 - 홈페이지 : www.norway.or.kr

- 노르웨이 개발위원회 (Innovation Norway)
 - 주 소 : 상동
 - 대 표 : Mr.Morten Henry Westvik(법적지위 : 상무참사관)
 - 한국인 직원 : 이길원 (Senior Market Adviser)
 - 전 화 : 795-6850/52 (교환 102)
 - 팩 스 : 798-6072
 - E-Mail : seoul@invanor.no

6.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EU 간 조선현안

양국간 특별한 현안사항은 없으나 현재 " 한-EU간 조선현안 " 이 역시 노르웨이 정부와도 간접적인 관계가 있음. 동 조선현안은 노르웨이 정부보다는 EU의 조선산업 노조에서 한국의 과잉설비와 보조금지급, 선가 덤핑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자국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수령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나. 한-EFTA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2006.9.1부터 한-EFTA간 자유무역 협정이 발표됨에 따라 EFTA회원국인 한-노르웨이간 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EFTA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발효 즉시 100%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EFTA원산지인 상품의 관세를 최장 7년간에 걸쳐 철폐하게 됨.

이번 타결로 우리나라는 의류와,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IT제품 등 공산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사과와 배, 김치 등 농산물의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II . 경제

7. 경제정책

노르웨이는 자유 시장경제 체재의 기본 틀 안에서 공정한 부의 재분배를 통한 완벽한 사회보장 제도를 추구하는 사회민주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지나친 사회보장 제도가 국민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근에는 자유 경쟁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가. 경제 실행정책

1) 정책방향

- 호불황의 극복이 극심한 국제경제 환경에서 노르웨이 경제의 안정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재정과 금융정책을 추진

- 2030년 GDP의 15%에 이를 연금수급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현재의 재정수요 확대추세에도 불구하고 석유기금의 축적을 계속 시행, 2010년까지 총 GDP의 93%수준의 석유기금 적립목표. 1996년부터 석유기금을 최초로 적립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말 현재 2,150억 불을 적립하였음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고자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환경 구축
 - 그러나 2005.9월 들어선 좌파 성격의 연립정부(노동당, 사회주의좌파당, 중앙당)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다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민영화 추진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세수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정책 실시

2) 재정정책

-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나 경제 안정화를 위한 탄력적 재정운영
- 부족 재정분의 보전을 위해 석유기금의 재정분야 전입을 허용하되 동기금에서 발생한 연간 총 수익의 4% 선으로 제한
- 그러나 사회보장 비용 증가에 따라 비석유부문의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재무부 측에서는 석유기금에서의 전입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임.
- 2005.9월 출범한 신정부경제정책은 케인즈 수요관리 정책을 기본으로 한 소리아 모리아 선언(Soria Moria)이 주요 기조임
 - 공공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추진 예정
- 2006년도 예산 주요 내용
 - 교육 및 보건, 복지분야, 지방정부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세수는 세수확대로 보충
 - 2001년 이전 노동당정부에서 채택한 재정정책 기본라인 “Action Line” Rule 준수
 - 2006년도 총 세수규모는 9,334억kr, 총지출규모는 6,763kr로 2005년 총 세수규모 대비 8% 확대재정 편성
 - 소득세, VAT 인상을 통한 세수확대
 - Top Marginal rate를 기존 61.5%에서 54.3%로 축소
 - 2006.1.1 부로 식품에 대한 VAT인상: 11% → 13%

3) 금융정책

- 금융정책의 주목표는 크로네화의 안정화와 물가안정
- 인플레이션 억제와 크로네화 안정을 위해 단계적 금리인하 추진
 - 국내물가 인플레이션율을 2.5%수준 이하로 안정화시킨다는 내부목표 운용
 - 중앙은행이 금리를 통한 인플레이와 환율 안정의 집행기관으로서 역할

- 최근 크로네화의 강세에 따른 자국경제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2002년도 말부터 지속적인 이자율 인하조치를 취하여 중앙은행 예금금리를 6%에서 2004년 3월 12일부터 1.75%까지 낮추었으나 다시 일부 상향 조정되어 2006년 3월 현재 2.5%에 이르고 있음

나. 대외경제정책

1) EU와의 협력

- 노르웨이는 EU의 회원은 아니지만 EEA협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EU의 제반 규정을 원용하는 등 EU와의 협력을 추진.
 - 상품, 용역, 자본 등의 자유이동 최대한 보장
- EU 가입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기민당의 EU가입에 대한 당론이 찬반으로 분열조짐
- 2004년 3월 노동당 당수인 Mr. Stoltenberg(현수상)의 EU가입 지지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동 문제에 대해 공식적 의견을 발표하고 있음.
- 또한 2004년 5월 1일부터 EU가 25개국으로 확대되면서 EU의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강화 정책으로 자국이 고립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고조
-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EU가입에 대한 입장은 노동당과 보수당이 지지를 표방한 반면, 중앙당과 사회좌파당은 절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기민당은 당내에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음. 특히 금년 5월 동구 10개국의 신규가입 이후, 재정 및 외규 부문에 대한 회원국간의 의견분열이 표면화되면서 노르웨이의 여론도 금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반대여론이 득세하는 등 주변상황에 따라 여론의 향방이 수시로 변하고 있음.

2) 자유무역 강화

- 평균 수입관세율 3.6%로 EU제국에 비해 낮은 관세율 적용으로 자유무역 강화
- 자국 내 제조업 기반취약으로 농수산물 등 1차 상품 이외 분야는 무관세 또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관세율 적용
- 개발도상국에 대한 GSP공여제도 지속추진 및 저개발국 원조 강화
 - 대부분의 EU국가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GSP공여를 중단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국에 대해서도 농산품류 등 일부 품목 GSP공여 계속)
 - 민간 주도로 GDP의 1%수준의 저개발국 원조 지속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노르웨이 경제정책

1) 정책방향

- 경제안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재정과 금융정책 추진

- 2030 년 GDP 의 15%에 이를 연금수급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현재의 재정수요 확대추세에도 불구하고 석유기금의 축적 계속 시행
- 2010 년까지 GDP 의 93% 수준의 석유기금 적립 목표(2005 년 말 2,150 억불 적립)

2) 재정정책

-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나 안정화를 위한 탄력적 재정운영
- 부족 재정분의 보전을 위해 석유기금 재정분야 전입을 허용하되 동 기금에 발생한 연간 총 수익의 4%선으로 제한 (Action Rule)

3) 금융정책

- 금융정책의 주목표는 크로네화의 안정화와 물가안정
- 인플레이션 억제와 크로네의 안정을 위해 단계적 금리인상 추진
- 크로네화의 강세에 따른 자국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약화를 막기 위해 2002 년도 말부터 이자율 6%에서 2004 년 3 월까지 1.75%까지 인하조치 하였으나 최근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자율을 다시 상향조정 2006.3 기준 2.5%에 이르고 있음

나. 최근 경제동향

1) 신정부 경제정책기조

- 2005. 10 월 들어선 신정부 경제정책은 케인즈 수요관리 정책을 기본으로 한 소리아 모리아 선언(Soria Moria)이 주요 기조임
-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 신정부는 노동당(61), 사회주의 좌파당(15), 중앙당(11)의 연립정부
- 2006 년 수정예산안 주요 내용
- 교육 및 보건, 복지 분야, 지방정부 등 공공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세수는 세수확대로 보충
 - 2001 년 이전 노동당정부에서 채택한 재정정책 기본라인 "Action Rule" 준수
- 2006 년 총수입규모는 9,334 억 kr 총지출은 6,763 억 kr 으로 2005 년도 총수입규모 대비 8% 확대재정 편성
- 소득세, VAT 인상을 통한 세수확대
 - Top Marginal rate 을 기존 61.5%에서 54.3%로 줄임으로써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과 확대
 - 2006.1.1 부로 식품에 대한 VAT 인상: 11% --> 13%
- 지난해 및 올해 3 차례에 걸친 인상으로 이자율이 2.5%까지 상승한 데 이어 내년도에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상승 예정

2) 경제성장률

- 노르웨이 경제가 2004년 호황으로 반전 이후 2006년도에도 경제 호황은 지속 전망
 - 노르웨이 정부 및 EIU에서 성장률이 전년대비 다소 떨어진 2.6 - 2.9%대 성장 전망
 - 2005년 두 차례에 걸친 이자율 상승이 있었으나 여전히 낮은 이자율수준과 유가로 인한 소비확대가 내수경기 부양

3) 인플레이션

- 국내소비확대, 고유가, 식품에 대한 VAT 인상예정으로 2005년도는 1.9% 물가 상승이 예측되며 2006년도에도 이보다 높은 2.6% 상승 전망
 - 2006.1.1부로 식품에 대한 VAT 인상: 11% --> 13%
 - 크로네 강세를 통한 수입물가 인하 등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요인도 있으나 최근 교통비, 임금인상 등이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인

4) 환율

- 2005년에 이어 2006년도에도 유로대비 노르웨이 크로네 강세 유지
 - 고유가 및 추가적인 이자율 상승전망, 수요를 바탕으로 한 견실한 경제성장 등이 크로네 강세의 주요 요인
- 미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가 2006년에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시장으로부터의 자본 이탈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달러대비 크로네 강세 유지.

9. 주요 산업 동향

가. 전체산업동향

경제발전의 기초가 제조업이 아닌 원유개발에서 시작된 노르웨이 경제의 특성상 노르웨이의 국민경제는 석유산업 의존도가 극히 높음. 따라서 노르웨이의 경우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서비스 부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005년 말 기준으로 국내 총 GDP의 60% 이상을 민간 및 공공부문 서비스부문이 점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이후에는 내수시장의 소비수요 증가가 노르웨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전체적인 산업별 국내 총생산(GDP) 구성비율을 보면 전통적인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 부문은 1.6%인 반면, 원유 및 가스채굴부문이 20%이상을 점하고 있음. 또한 제조업부문의 비중이 약 9%수준으로 취약한 기반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민간 서비스 부문이 35.4%, 공공서비스 부문이 약 20.2%에 이를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고용측면에서도 전체 경제활동인구 2.3백만 중 약 45%인 1,033천명이 민간 서비스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 종사자도 약 73만 명으로 총 고용의 31%이상을 점하고 있음. 이에 반해 제조업 부문 종사자는 약 30만 명, 건설업 13만 명 수준이며,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약 9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음. 원유 및 가스채굴분야 고용인력은 약 2.3만 명으로 생산 규모에 비해 많지는 않음.

이러한 노르웨이 서비스산업의 비대한 규모는 복잡한 해안과 국토중앙을 가로지르는 산맥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지역별 분산화 현상과 높은 물가 및 임금수준 등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이 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특히 최근에는 유통부문의 대형화, 체인화가 빠르게 추진되면서 동 부문이 상당히 활기를 띄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제조업 부문은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03년도 하반기 이후 노르웨이 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섰는데 서비스 부문, 즉 국내 유통부문의 확대와 내수경기의 활성화가 성장세 회복의 주요 요인임. 특히 200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 고유가의 지속으로 석유부문이 전례 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고, 제조업을 위시한 산업경기도 성장세를 완전 회복함으로써 2004년도 2.9% 2005년도에는 2.5%대의 GDP 성장율을 보이고 있음.

2006년도 산업별 전망을 보면 석유 및 가스채굴 부문은 정부의 생산량 유지정책과 국제 고유가의 지속으로 산업성장의 동인이 되고 있음. 이에 반해 농림수산업과 광산업의 경우에는 다소의 침체가 예상되며, 수산업은 국제가격의 회복 및 해외수요의 증가로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음. 제조업부문의 경우에도 분야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중간재 및 자본재에 대한 해외수요의 회복과 국내 소비수요의 증가 등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또한 서비스 부문 중 민간서비스 부문은 내수경기의 활황세에 편승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부문 서비스도 국민들의 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요구가 지속 강화되고 있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금년도 노르웨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은 국내 소비수요 증가 및 서비스부문의 성장이며, 제조업 등 2차 산업부문은 현상유지 내지 소폭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경기부양을 위한 석유부분과 건설부문의 공공투자의 확대가 전체 산업경기의 활력소로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나. 건설산업 동향

최근 노르웨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5년 건설사들의 수주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이 증가하였음. 금년도 들어서도 노르웨이 건설산업의 호황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신규 주택건설 수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금년 2/4분기 중 수주량은 주택용인 경우 각각 전년동기 대비 28%이상 증가하였으며, 상업용 건물수요도 39%나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기준으로도 2006년 4월까지 누적기준으로 NOK61,797백만을 기록, 전년도 보다 15.7% 증가, 건축경기가 완전한 성장세로 접어든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음. 이는 중소형을 중심으로 한 주택건설 부문의 지속적인 건축수요 증가와 상업용 및 산업용 건축물의 신규 수요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특히 상공업 중심지인 오슬로 및 인근 지역에서의 건축수요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2005년도 노르웨이 건설산업의 총 매출규모는 Nok2,017억으로 전년도 대비 13%의 증가율을 보였음. 분야별 매출규모를 보면 대지조성 부문이 Nok133억으로 전년 대비 18.9%나 증가하였으며, 건축 및 엔지니어링부문이 Nok1,048억으로 9.8%나 증가하였음. 또한 설비공사 부문의 총 매출액은 Nok440억으로 8.4%가 증가하였으며, 건물 내장공사 부문도 총 Nok128억의 매출로 6.6%가 증가하여 전 부문이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그러나 건설장비 대여업의 경우는 매출규모가 Nok18억으로 예년수준에 그쳐, 국영 건설회사인 Mesta Ltd.의 출범 이후 설비 대여업의 사업기반이 지속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경기부양 및 실업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건설투자의 확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도의 경우 도로건설 부문의 매출이 총 Nok120억 수준으로 전년도 이어 Nok100억을 상회하고 있음. 공공 건설엔지니어링 부문도 Nok100억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각종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확대추세는 금년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전체 건설산업의 성장세 회복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그러나 향후의 건축경기를 알 수 있는 2006년 1-2월 중 허가된 건축물의 분야별 구성을 살펴보면 주택건설이 64만S/M로 전년동기 대비 7.6%가 감소하였으며, 비 주거용 건물건축 허가규모도 총 58만 S/M로 약 5%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특히 비 주거용 건물건축 중 사무실 등 업무용 건물이 약 3만 S/M로 전년동기 대비 51%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 단층주택 건물허가 규모는 36만 S/M로 전년 동기대비 5.8%의 신장세를 보이는 등 부문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건물허가 건수의 감소가 곧바로 건축경기의 하강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내년도 이후부터 지금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다. 농림축산업

노르웨이는 대부분이 산악지형이며 기후가 차가워 농사에는 적당치 않아 전체 면적 중 2.9%만 경작되고 있음. 현재 노동인구 중 4%정도가 농업분야(수산업, 임업, 수렵 포함)에 종사하고 2005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의 1.9%를 생산하고 있음

전체 농경지중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2005년도의 경우 총 8.5백만 데카르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 이중 곡물이나 야채 등 식용 농산물 생산면적은 3.8백만 데카르에 그치고 있고, 사료용 목초지가 4.8백만 데카르로 전체 경작지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음. 곡물생산 중 보리생산 면적이 총 1.6백만 데카르로 가장 크며, 다음이 밀 801천 데카르, 호밀 69천 데카르순임. 예년에 비해 경작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작물은 밀, 귀리, 호밀 등이며, 보리와 감자, 채유작물의 경작면적은 매년 소폭씩 감소하고 있음.

노르웨이의 경우 대부분의 농가가 축산업을 겸하고 있는데 주요 가축은 소, 돼지, 양 및 닭 등으로 정부의 엄격한 수입규제와 가격유지 정책으로 지원을 받고 있음. 2005년도말 현재의 가축수를 보면 소가 약 319천 두로서 이중 젖소가 83%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육우 사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생후 1년 이상된 양은 총 928천 마리이며, 우유생산용 염소는 44천 마리 수준임. 농가 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계닭의 경우 총 3.3백만 마리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돈이 98천 마리, 돈육용이 1.4백만마리, 말이 29천마리 등임.

또한 국토의 37%인 12백만 ha가 산림지역으로 덮여 있는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노르웨이의 임산업은 총 GDP의 1.1%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노르웨이 정부는 자연보호 및 임산자원 관리차원에서 연간 원목벌채량을 평균 7백만 - 8백만 입방 미터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임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현재 노르웨이 최대 원목생산 지역은 오슬로 북부의 스웨덴 국경 지역인 Hedmark주로서 총 생산량의 28%를 점하고 있음.

라. 석유화학산업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사상유래 없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노르

웨이의 석유산업부문 투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노르웨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도 노르웨이의 석유부분 투자는 총 Nok887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도 대비 25%나 증가한 것임. 이러한 투자확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경제성의 증가로 바렌츠해의 천연가스 개발 등 신규 유전 발굴부문의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라크 사태 이후의 고유가 지속전까지만 해도 노르웨이의 석유산업은 채굴가능 매장량의 감소와 시설 노후화등으로 2~3년 후면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됐었음. 그러나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심해유전 개발의 경제성이 높아져 노르웨이가 제2의 석유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음. 이에 따라 노르웨이 정부및 석유업계는 동 부문 투자계획을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증가 부문은 유전개발 및 육상 설비부문으로 예상되나 기존유전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05년도 주요 부문 별 투자계획을 보면 유전개발 및 기존유전에 대한 투자가 총 Nok530억, 육상설비 부문이 Nok164억, 원유 및 천연가스 수송용 파이프라인 건설에 Nok106억, 원유 탐사 부문 Nok84억 등임. 이중 유전개발 부문투자가 Nok179억으로 전년도 보다 Nok42억이 증가했으며 기존 유전의 유지보수 및 설비 현대화 부문 투자도 Nok351억으로 전년대비 Nok43억이 증가했음. 2004년도 실투자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파이프라인 부문으로 전년도의 Nok61억 대비 72%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석유부문의 투자활성화로 원유생산량을 2006년에도 일일 평균 300만 배럴 수준을 유지한다는 정책임. 그러나 대형 신규유전의 발굴 등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도한 원유생산량의 유지정책이 노르웨이 석유산업의 쇠퇴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경제계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음.

최근 노르웨이 석유산업계에는 고유가에 따른 생산량 유지정책으로 3-5년 후의 원유자원의 고갈에 따른 석유산업의 급격한 쇠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음. 이에 따라 노르웨이 정부는 석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북해와 노르웨이해의 대륙붕 개발 및 석유부문의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마. 수산업

2005년도 노르웨이의 수산물 어획규모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2,382백만톤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하였으나 금액면에서는 총 Nok115억을 포획하여 2004년도 대비 약 10.9% 증가하였음.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어획고는 줄어들었으나 금액면에서는 증가함. 2006년 6월까지 통계청 통계에서 의하면 총 어획고는 1.3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으나 금액면에서는 Nok5.9십억을 기록 오히려 전년대비 6% 증가세를 보였음. 이는 2003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적인 조류 독감 등의 여파로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범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국제 수산물 가격도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수산물에 대한 국제수요의 전반적인 증가세는 EU, 동구유럽 및 일본등 노르웨이 수산물의 3대시장에서 다같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안정적인 성장

을 위해서는 EU와의 양식연어의 반덤핑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관건으로 현재 노르웨이 정부는 동 사안을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임. 2005년도 노르웨이의 해양 어획량은 총 2.4백만 톤으로 2004년보다 다소 줄어들었으며, 금년에 상반기에도 약 1.3백만톤으로 지난해 대비 11%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양식업 분야도 업체들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연어의 공급과잉 현상이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위원회(EFF: Norwegian Seafood Export Council)는 밝히고 있음. 또한 전년도 하반기부터 브라질 등 남미지역의 수요회복과 구동구지역 및 아시아지역 등에서의 노르웨이산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EU와의 연어문제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전망은 희망적임.

노르웨이 최대 생산 및 수출어종인 연어의 수출가격도 2004년 하반기부터 (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완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양식 연어의 평균수출가격은 2004년도 kg당 Nok 17.49에서 2005년도 Nok20.25로 상승했으며, 냉동연어의 수출가격도 전년도 3/4분기 대비 10%이상 상승한 Nok25.94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 이외에도 대구, 플락 등에 대한 해외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금년도 노르웨이 수산업계의 동향도 어선에 대한 신규 조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노르웨이 수산업은 어획 장비의 현대화와 양식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기반으로 앞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러한 해외수요의 회복과 국내 산업기반의 현대화 등으로 수산업부문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파산직전까지 몰렸던 Pan Fish, Fjord Seafood 등 노르웨이의 주요 수산물 기업들의 주가 가격도 5-7%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식연어의 경우 아직은 국제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며, 생산량의 적절한 조절 등 관련 업계전체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시장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음

바. 제조업 동향

2005년도 노르웨이 제조업(광산분야포함)분야의 총생산판매 규모는 Nok4510억 억으로 전년의 Nok4,140억 대비 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경기가 본격적인 성장세에 진입한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이는 내수활황과 해외수요의 안정적 성장으로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됨

산업별로 살펴보면 정유 및 화학산업의 판매실적이 지난해 Nok660억에서 Nok790억으로 20% 늘어나 제조업성장을 주도 하였으며, 다음은 운송장비부분이 2004년 Nok440억에서 2005년 Nok520억으로 증가하였고 노르웨이 주요 산업분야인 조선업은 2004년 감소에 이어 2005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섬. 그 외 금속생산이 지난해에 비해 21% 급성장하여 눈에 띄는데 이는 건설업의 호황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반면 펄프 및 종이산업과 운반차량의 생산은 지난해 대비 각각 2%, 6% 하락된 것으로 분석됨.

현지 기업가들의 2006년 경기전망은 분야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노르웨이 전체 산업경기가 성장세를 견지할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 하고 있음. 산업분야별 주요기업들의 경기전망을 보면 목재 및 제지산업, 금속산업 분야 기업들은 2006년 경기 전망을 아주 밝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초화학 및 비철금속산업, 엔지니어링, 기계 및 설비산업분야는 안정적 성장세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반해 국내시장 중심의 식품 및 음료산업 분야는 예년수준 유지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현지 기업들은 전망하고 있음.

10. 정보조사 자료원

- Ministry of Finance
 - Akersgt. 40, Postboks 8008 Dep 0030 Oslo Norway
 - Tel: +47 22 24 90 90
 - E-mail: postmottak@finans.dep.no
 - web: www.odin.dep.no

- Norges Bank (The Norwegian Central Bank)
 - Bankplassen 2 Postboks 1179 Sentrum 0107 Oslo
 - Tel: +47 22 31 60 00
 - Fax: +47 22 41 31 05
 - E-mail: central.bank@norges-bank.no
 - Web: www.norges-bank.no

- Statistics Norway
 - Kongens gt. 6 (Sjøfartsbygningen) Postboks 8131 Dep 0033 Oslo Norway
 - Tel: +47 21 09 00 00
 - Fax: +47 21 09 49 73
 - Web: www.ssb.no

- Nærings- og handelsdepartementet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Einar Gerhardsens plass 1 Postboks 8014 Dep 0030 Oslo Norway
 - Tel: +47 22 24 90 90
 - Email: postmottak@nhd.dep.no

- Dagens Næringsliv (Financial Times Of Norway)
 - DN nye medier AS Grev Wedels plass 9 Postboks 1182 Sentrum 0107 Oslo Norway
 - Web: www.dn.no

- NHO (Confederation of Norwegian Business)
 - Postboks 5250 Majorstuen 0303 Oslo Norway
 - Tel: +47 23 08 80 00
 - Fax: +47 23 08 80 01
 - Web: www.nho.no

- Innovation Norway
 - Innovasjon Norge Pb. 448 Sentrum 0104 Oslo
 - Tel: +47 22 00 25 00
 - Fax: +47 22 00 25 01
 - Web: www.invanor.no

III.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주요 지표

지표	2001	2002	2003	2004	2005
명목GDP(US\$억)	1,697	1,907	2,209	2,325	2,928
1인당 GDP(US\$)	37,315	42,632	48,259	50,478	63,959
실질성장률(%)	1.9	1.0	0.3	2.9	2.5
물가상승률(%)	3.0	1.3	2.5	0.5	1.6
인구(백만명)	4.5	4.5	4.6	4.6	4.6
경제활동인구(백만명)	2.4	2.4	2.4	2.4	2.4
실업률(%)	3.5	3.9	4.6	4.5	4.6
수출(Nok십억)	532	473	483	554	665
수입(Nok십억)	296	276	283	325	353
경상수지(Nok십억)	260	208	212	239	319
외환보유고(US\$억)	233	320	372	426	-
연평균환율(Nok/US\$)	8.99	7.98	7.08	6.74	6.44
연평균환율(Nok/Euro)	8.05	7.54	8.02	8.37	8.00
산업생산증가율(%)	-	-	-	1.9	1.0
원유생산량(백만배럴/일)	3.4	3.3	3.3	3.2	3.02
실질임금상승률(%)	4.5	4.8	3.9	3.8	3.5

자료원 : Statistics Norway(www.ssb.no), EIU

주 : 2005년은 잠정치

주요 대외거래지표

(단위: Nok십억)

지표	2001	2002	2003	2004	2005
자본수지	-25.3	-13.6	-11.7	-10.5	-6.7
경상수지	260	208	212	239	319
무역수지	236	197	200	229	312
- 수출	532	473	483	554	665
- 수입	296	276	283	325	353

자료원: Statistics Norway(www.ssb.no), EIU

주 : 2005년은 잠정치

12. 무역통계

가. 노르웨이 수출입통계

노르웨이 주요 수출대상 국가

(단위: 백만 NOK)

수출대상국	2002	2003	2004	2005
총 계	481,475	483,527	553,826	665,447
영 국	93,052	98,217	123,607	169,479
독 일	59,225	65,508	71,420	83,833
네 덜 란 드	44,542	45,005	55,027	65,894
프 랑 스	55,702	47,690	53,194	60,086
미 국	41,082	39,855	46,585	44,048
스 웨 덴	35,286	35,245	37,238	43,396
카 나 다	17,054	17,447	21,942	25,603
덴 마 크	17,823	18,416	20,342	22,624
일 본	7,801	6,872	6,873	6,522
중 국	7,406	6,086	6,145	5,831
한 국	4,762	3,522	4,926	5,037

자료원: Statistics of Norway(www.ssb.no)

노르웨이 주요 수입대상 국가

(단위: 백만NOK)

수입대상국	2002	2003	2004	2005
총 계	275,975	282,437	325,490	353,869
스 웨 덴	42,442	45,436	51,099	51,484
독 일	36,136	37,495	44,290	48,068
덴 마 크	21,776	22,180	23,837	25,844
영 국	19,996	20,158	21,228	24,231
중 국	14,683	12,403	16,179	19,635
미 국	16,941	14,553	15,817	17,286
프 랑 스	12,873	12,280	13,884	14,192
이 태 리	10,656	11,210	11,484	11,744
일 본	8,467	9,810	11,039	11,334
네 덜 란 드	12,879	12,576	14,295	13,993
한 국	1,700	3,199	2,467	3,672

자료원: Statistics of Norway(www.ssb.no)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NOK)

품목	2003년	2004년	2005년
Petroleum and products	222,927	266,830	338,223
Gas, natural, manufac.	70,874	83,905	111,031
Non-ferrous metals	29,407	35,280	36,664
Fish, fish preparations	25,117	27,281	31,030
Iron and steel	7,458	11,740	11,247
General ind. Machinery	8,526	9,331	10,493
Other transp.equipment	17,602	10,359	9,352
Paper, paperboard	8,112	8,873	8,558
Electr. machinery,app.	6,810	7,300	8,088
Organic chemicals	5,990	6,718	7,173

자료원: Statistics of Norway(www.ssb.no)

주요 품목별 수입실적(10대 품목)

(단위: 백만NOK)

품목	2003년	2004년	2005년
Road vehicles	27,326	34,365	37,010
General ind. machinery	14,700	15,305	20,778
Misc.manufactured art.	15,889	17,016	18,202
Electr. machinery,app.	14,947	17,279	17,550
Metallif. ores, scrap	11,240	14,833	17,514
Office machines, edb	13,169	15,458	15,939
Iron and steel	76,230	12,054	15,504
Telecomm. apparatus	10,909	13,846	14,115
Machinery for spec.ind	9,894	11,825	13,865
Manufactures of metals	10,783	13,499	13,758

자료원: Statistics of Norway(www.ssb.no)

나. 우리나라와의 수출입통계실적

우리나라의 대 노르웨이 연도별 수출입실적

(단위: US\$천)

연도	수출	수입
2001	357,090	401,728
2002	377,892	609,776
2003	739,494	537,884
2004	322,592	560,309
2005	468,312	638,797
2006.7	598,662	461,783

자료원: KOTIS

우리나라의 대노르웨이 품목별 수출실적(10대품목)

(단위: US\$천)

품목	2004년	2005년
선박	94,764	245,894
승용차	63,801	107,891
타이어	17,511	17,974
칼라TV	2,842	10,268
편직제의류	10,025	8,478
기타 섬유제품	3,972	3,868
화물자동차	306	3,253
합성수지	3,005	2,931
금속절삭가공기계	1,272	2,892
기타플라스틱제품	2,445	2,617

자료원: KOTIS

우리나라의 대노르웨이 품목별 수입실적(10대품목)

(단위: US\$천)

품목	2004년	2005년
선박용부품	72,291	104,847
기타산업기계	76,962	70,554
자동제어기부품	29,592	35,3314
펌프	42,661	34,448
기타어류	32,944	27,906
나프타	0	24,456
기타 기계류	6,687	23,894
배전 및 제어기	20,395	23,468
용접기	16,914	21,278
니켈 및 스크랩	53,829	20,532

자료원: KOTIS

13. 투자통계

노르웨이 대외투자현황(국가별)

(단위: 백만NOK)

국가명	2001	2002	2003	2004
유럽	-17,427	31,598	-3,095	9,336
EU	-16,092	25,084	-3,936	10,701
스웨덴	5,211	8,085	-735	-11,388
덴마크	3,439	1,083	802	4,050
영국	3,069	436	3,863	-3,054
독일	-17,810	19,141	-2,907	-892
기타 유럽국가	-1,335	6,514	841	-1,365
캐나다 등 북미 및 남미	1,300	-2,186	5,430	-7,244
미국	-1,600	3,387	2,868	1,489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840	922	10,110	7,789
순계(Sum transactions)	-13,287	30,334	12,445	9,881

노르웨이 대외투자현황(분야별)

(단위: 백만NOK)

분야	2001	2002	2003	2004
Oil extraction and mining	6,937	-5,226	8,683	17,053
Manufacturing	12,370	18,473	-204	387
Wholesale and retail trade, Hotels and restaurants	828	119	-37	3,331
Transport, Communication	-23,642	12,786	1,641	1,626
Bank, financing and insurance	576	3,589	1,602	-777
Business activities	-10,240	-2,723	347	-12,028
Other sectors/unallocated	-116	3,316	413	289
Sum transactions	-13,287	30,334	12,445	9,881

자료원 : Norwegian Central Bank

주1 : 2004년은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수치를 반영하고 있음.

주2 : 노르웨이는 순투자유치 개념으로 투자실적을 집계. 즉 연도별 노르웨이에 투자된 금액에서 철수된 금액을 상계

외국의 노르웨이 투자현황(국별)

(단위: 백만NOK)

국별	2001	2002	2003	2004
유럽	18,294	2,049	10,213	-17,238
EU국가	18,825	3,232	10,286	-18,291
스웨덴	1,719	1,358	927	9,853
덴마크	2,739	257	8,735	987
영국	3,437	2,033	1,982	1,614
독일	-1,062	-199	-619	1,523
기타 유럽	-531	-1,183	-73	1,053
캐나다 등 북미 및 남미	5,336	7,136	10,137	24,689
미국	1,069	665	1,959	27,169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123	-642	-661	-122
순계(Sum transactions)	23,507	8,543	19,689	7,329

외국의 노르웨이 투자현황(분야별)

(단위: 백만NOK)

분야	2001	2002	2003	2004
Oil extraction and mining	9,009	7,688	1,229	-4,195
Manufacturing	3,672	-2,167	5,013	3,360
Wholesale and retail trade, Hotels and restaurants	8,397	-953	-2,152	4,519
Transport, Communication	1,472	2,078	8,292	2,877
Bank, financing and insurance	834	1,187	336	4,693
Business activities	1,528	1,621	7,421	-5,232
Other sectors/unallocated	-1,405	-911	-450	1,307
순계(Sum transactions)	23,507	8,543	19,689	7,329

자료원: Norwegian Central Bank

주1: 2004년은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수치를 반영하고 있음.

주2: 노르웨이는 순 투자유치 개념으로 투자실적을 집계. 즉 연도별 노르웨이에 투자된 금액에서 철수된 금액을 상계

노르웨이의 대한 투자 진출 동향

년 도	건 수	금 액(US\$천)
1998	3	156
1999	1	2,450
2000	4	586
2001	3	1,654
2002	7	147,113
2003	7	5,536
2004	7	101,663
2005	7	36,358

자료원 : Invest Korea 투자통계(2006년 6월말 기준)

주: 투자 금액은 도착기준금액임. 우리나라의 노르웨이 투자는 2004년 12월 400만유로에 해당되는 현대자동차의 판매법인 투자뿐임

IV.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가. 기후 특성

노르웨이는 지구 최북단에서 남북으로 길게 위치한 지형으로 인해 매우 추운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겨울철에 서해안을 지나는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북해에 면한 서해안 지역은 생각보다는 비교적 온난한 편임. 그러나 위도상 최북단의 도시들과 동북부 내륙 쪽은 한겨울에 -40C 까지 내려가는 극한 기후를 보이고 있는 곳도 있음.

노르웨이 기후 역시 사계절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봄, 가을이 매우 짧아 실제 생활에서 봄, 가을의 계절감을 느끼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음. 노르웨이의 기후를 특징적으로 말하면 길고 어두운 겨울과 짧고 시원한 여름이 특징이라 하겠음.

4월-9월 사이의 봄과 여름에는 맑은 날씨와 온난한 기온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5-6월 중에는 아침 저녁의 기온차가 상당히 심한 편임. 10월-3월의 가을과 겨울 중 10-11월에는 비가 많이 오는 다습한 계절이며 11월 중순부터는 눈이 많이 내리며 영하의 날씨가 지속됨.

재미있는 현상은 노르웨이 국토의 남북을 종단하는 산맥의 영향을 받아 서해안 지역과 내륙인 오슬로 등 남동부 지역간의 기후변화는 다소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임. 오슬로 내륙지방에 비가 많이 오면 서해안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함.

수도인 오슬로의 2005년도 연평균 기온은 5.6도C이며, 여름 최고기온 7월의 30.3도C, 겨울 최저기온은 1월의 -20.1도C 정도임. 오슬로 시는 북구지역에 위치해 있기는 해도 통계적으로 볼 때 북구지역 도시 중에서는 그래도 바람이 적고 햇볕이 가장 많은 도시로 평가되고 있음.

오슬로 시의 2005년도 월평균 기온(C)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C)	-4.6	-4.0	-0.2	4.5	10.5	15.2	16.4	14.8	10.8	6.6	0.7	-3.1

자료원: Statistical Yearbook of Norway 2005

노르웨이 방문 시 현지 날씨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기상 관측국의 날씨 사이트인 www.dnmi.no를 접속하여 1주일간의 단기예보 상황을 확인하면 의류 등 여행준비에 크게 도움

주요 도시별 평균기온 (1961년 - 2005년)

구분	Oslo	Bergen	Trondheim	Bodø	Tromsø	Vardø
평균	5,7	7,7	4,7	4,5	2,5	1,3
1월	-4,3	1,5	-3,3	-2,2	-4,4	-5,1
2월	-4,0	1,6	-2,7	-2,0	-4,2	-5,4
3월	-0,2	3,3	-0,1	-0,6	-2,7	-3,6
4월	4,5	5,9	3,0	2,5	0,3	-1,1
5월	10,8	10,5	8,7	7,2	4,8	2,5
6월	15,2	13,5	12,0	10,4	9,1	6,2
7월	16,4	14,5	13,2	12,5	11,8	9,2
8월	15,2	14,4	12,7	12,3	10,8	9,1
9월	10,8	11,5	9,0	9,0	6,7	6,6
10월	6,3	8,7	5,6	5,3	2,7	2,4
11월	0,7	4,7	0,3	1,2	-1,1	-1,3
12월	-3,1	2,6	-2,0	-1,2	-3,3	-3,7

자료원: Statistics Norway(www.ssb.no)

2. 시차/근무시간

가. 시 차

- 노르웨이는 GMT기준+1시간이므로 한국(GMT +9시간)보다 8시간 늦음
 - 한국 정오(12시)는 현지시간 오전 4시
 - 현지시간 정오(12시)는 한국시간 오후 8시
 - 현지 근무시간(08:30-16:00)에 맞추어 한국시간 16:30-24:00사이에 통화 필요
- 썬머타임 적용시에는 한국과의 시차는 7시간임
 - 99년부터 전유럽이 공동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음
 - 썬머타임은 매년3월 마지막 일요일 새벽 2시에 시작하여 동년 10월 마지막 일요일 새벽 2시에 종료됨
 - 썬머타임 기간 : 2006. 3. 26 - 10. 28

나. 근무시간

□ 각 직장별 근무시간은 형편에 따라 조금씩 상이

- 제조공장 : 07:00부터 15:00 까지(회사별로 30분정도의 차이가 있음)
- 일반회사 : 08:30부터 15:30 까지(가장 보편적 근무시간)
- 정부기관 : 08:00부터 15:30 까지(겨울철에는 08:00 부터 15:00까지)
- 외국공관 : 09:00부터 16:00 까지(일부 공관은 15:30까지)
- 우 체 국 : 09:00부터 17:00 까지(지역별 번잡도 등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
- 금융기관 : 08:30부터 15:30 까지(목요일에는 08:30부터 17:00까지)(주말을 대비하여 목요일에는 늦게까지 개점)

- 상 가 : 10:00부터 20:00까지(토요일에는 대부분 18:00까지)
 - 정부기관 중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관공서는 요일별로 상이한 민원처리 시간을 운영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상가의 경우에는 전문점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 소비재상가는 18:00시 경에 문을 닫는 것이 일반적이며 슈퍼등 생필품 가게는 이보다 1-2시간 더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최근에는 일부 주택가 슈퍼마켓의 경우 평일에 21:00 혹은 22:00 까지 개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슈퍼마켓 : 10:00부터 21:00까지 (토요일에는 18:00까지)
 - IKEA 체인 : 10:00부터 20:00까지 (토요일에는 18:00까지)

3. 도량형

가. 도량형

길이, 무게, 부피, 거리등 모든 도량형에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골프장도 길이 단위를 야드에서 미터로 완전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매우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전통 노르웨이식 방법도 산간지방에서는 간혹 사용됨. 즉 길이에서는 노르웨이 언어로 Mil(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10km를 나타내며 면적으로는 Maal(몰)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는 984.34㎡를 지칭함.

나. 전기 규격

일반 가정용 전기는 220V, 50Hz이며 산업용의 경우에도 Hz는 모두 50Hz임. 노르웨이는 전력의 99%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음. 한국에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220V의 일반 범용 가전제품은 현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고급 음향기기 등 주파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제품은 현지 주파수가 50Hz인 점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고 현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함.

4. 출입국/비자

가. 비 자

우리나라와 노르웨이간에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관광목적 입국 시 90일 이내 체류자에게는 비자가 면제됨.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 시에도 입국목적을 특별히 묻지 않고 입국을 허가하고 있어 단기체류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그러나 장기체류(주재, 유학 등 3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을 통해 입국 전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본국 조회 기간 등을 감안하면 평균 6-8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단 노르웨이에 입국한 이후에는 EU국가나 인근 스칸디나비아제국으로 육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여권체크나 비자 확인을 하지 않음. 따라서 입국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에게 여권을 보여주고 입국 스탬프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아 차후 출입국 심사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함

노르웨이 입국 시 특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은 관광목적의 90일 비자면제 기간임. 이는 총 6개월 이내에만 90일 동안 비자 없이 체재가 가능한 것으로 90일 체류 후 인근국으로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최초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임. 즉 90일 무비자 입국은 6개월 기간 중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함.

나. 비자 발급처

-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58-8
 - 전 화 : 795-6850/2, Fax : 798-6072
- 노르웨이 이민국(Utlendingsdirektoratet)
 - 주 소 : P.O.Box 8108 Dep., 0032 Oslo
 - 전 화 : +47-67 53 08 90

다. 출입국 절차

노르웨이 출입국 절차상 특별한 유의사항은 없으며, 입국 심사 시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공항에서 제 3국 국민(EU 및 EEA국민 이외)을 위한 여권검사창구에 여권을 제시하면 방문목적, 체류 예정 기간 등 간단한 질문 후 입국이 허용됨.

노르웨이 입국 시 면세 통관 품목과 수량은 다음과 같음

- 노르웨이 화폐 기준 Nkr25,000 이상 소지하는 경우 세관 신고
 - 알콜 1리터, 담배 200개비(20세 이상)
 - 초콜릿 1Kg 이하, 고기 3Kg이하

라. 참고 사항

노르웨이는 술 문화에 관한 까다롭고 엄격한 면이 있어 주점 또는 허가된 식당, 가정에서의 음주는 가능하나, 공원 등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절대 금지되어 있어 주의가 요망됨. 이들 금지된 장소에서의 음주 시 적발될 경우에는 과중한 벌금은 물론 구류 등 체형까지도 가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노르웨이에서 음주 적발 시는 음주량에 관계없이 음주사실이 인정되면 바로 구속되므로 이점에 특히 주의하여야 함

특히 자동차 실내에 뚜껑이 열린 술병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음주여부에 불문하고 운전자가 음주 운전 중이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므로 각별히 조심하여야 함. 또한 술병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포장을 하여 타인이 술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지 에티켓이라 할 수 있음.

5. 환율/환전

가. 화폐 단위

화폐단위는 크로네(Krone)이며 약칭은 Nkr 혹은 NOK로 사용하며 (이는 스웨덴 및 덴마크, 아이슬랜드의 크로네화와 구분하기 위한 것임), 1Nkr는 100 Ore임. 주화는 50 Ore, 1, 5, 10, 20 Nkr가 있으며, 지폐는 50, 100, 200, 500, 1000 Nkr권이 있음.

화폐의 최소단위가 50 Ore인 관계로 시중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소수점 이하인 Ore는 50 이상인 경우에는 1크로네로, 50 미만인 경우에는 50 Ore로 계산하고 있음.

노르웨이는 EU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국화폐인 NOK화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

나. 환율

노르웨이 크로네화는 2001년 연평균 미국달러 대비 환율이 8.99 Nkr까지 약세를 보였으나 2002년도 하반기부터 강세를 반전되었음. 이러한 노르웨이 크로네화의 강세는 2003년도 이후 중앙은행의 이자율인하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노르웨이는 유로화를 환율변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2003년 4/4분기 이후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 Nkr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전년도에 이어 2006년에도 유로화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Nkr화의 대미달러 년 평균환율은 2001년 8.99에서 2002년 7.98, 2003년 7.08 수준이었으나 최근 국제유가의 고가 행진 등으로 2005년 대미달러기준 평균환율이 6.445이고 유로화대비 평균환율은 8.007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 2006년 들어서는 크로네화 강세가 더욱 두드러져 8.30 기준 달러대비 6.2793 유로화 대비 8.06의 환율을 보이고 있음.

다. 환전

환전은 모든 시중은행이나 환전소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일부 대형 우체국에서도 환전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음. 공항, 호텔, 시내환전소, 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환전이 가능하나 기본

환전 수수료가 다소 높은 편이므로 필요한 금액을 신중히 산정하여 한꺼번에 환전 함으로서 비용을 절감하는 지혜가 필요함.

또한 환전 수수료는 환전기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현금과 수표의 환전 수수료도 차등을 두고 있음. 일례로 여행자 수표를 환전하는 경우에 1장당 최저 10NOK에서부터 많게는 40NOK의 수수료를 받는 곳도 있으며 현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30NOK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공항, 중앙역 등지에 자동 환전기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할 경우 환전수수료가 Nok10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함.

따라서 여행자 수표를 소지할 경우 현금에 비해 환전 수수료가 다소 비싼 편이므로 여행시 현금을 보유할 것인지 여행자 수표를 소지할 것인지는 여행의 전체 일정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르웨이 크로네화가 지정 통화로 되어 있어 사용할 만큼의 현금을 환전해 오면 그만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음.

현지에서는 호텔보다는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다소 유리하고 공항에서의 환전은 시중은행에서 환전하는 것과 동일한 환율을 적용하고 있음. 여행자로서 가장 편하게 환전할 수 있는 곳은 오슬로 Gardermoen 공항 입국장 왼편에 있는 은행 환전소를 들수 있음.

라.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거의 모든 가게에서 통용되며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DnB, NORDEA은행에서 VISA와 MASTER카드사와 제휴하고 있어 두 종류의 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이와 반면 유럽에서는 American Express 카드는 가맹점이 많지 않아 받지 않는 곳이 많음.

6. 물가정보

□ 도시 : 오슬로(노르웨이)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769.2	7.1	구두(1켈레, 소가죽)	184.6
1.2	넥타이(1개, 실크100%)	107.4	7.2	치약(150g, 1개)	3.4
1.3	와이셔츠 (1벌,면100%,긴팔,흰색,현지브랜드)	153.5	7.3	칫솔(1개)	4.4
1.4	양말(1켈레, 면100%, 현지산)	18.5	7.4	면도기(1세트)	11.2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615.4	7.5	건전지(1세트, 1.5V AA)	4.3
1.6	스타킹 (1켈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6.2	7.6	화장지(1통, 300매)	3.2
1.7	청바지(Levi's)	107.5	7.7	비누(1개)	1.7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26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6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14.5	8.2	볼펜(12개)	12.2
2.3	닭고기(1KG, 생닭)	7.5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10
2.4	쌀(1KG, Short Grain)	2.5	8.4	공CD(1통, 12개입, 700MB)	15.1
2.5	밀가루(1KG)	1.4	8.5	휴대폰(범용형)	153.8
2.6	설탕(1KG, 백설탕)	1.8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22.9

2.7	계란(10개)	4.4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138.5
2.8	감자(1KG, 현지산)	2.3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53.8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2.3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49,230
3.1	고추장(1Kg)	12.2	9.2	엔진오일(1L)	22.9
3.2	된장(1Kg)	6.9	9.3	휘발류(1L)	1.6
3.3	라면(1개)	1.5	9.4	자동차등록비(2,000cc)	1,046.2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등)	24.5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2,153.8
3.5	불고기(1인분, 200g)	34.6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34.6	10.1	지하철(1구간)	3.1
3.7	김치찌개(1인분)	22.9	10.2	시내버스(1구간)	4.6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12.3
4.1	햄버거(1개)	5.4	10.4	택시(추가요금/Km)	2.1
4.2	피자(1판)	29.8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1.5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121.5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3.5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13.7
4.5	담배(수입산, 1갑)	9.8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2
4.6	위스키(1병, 750ml)	58.3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0.8
4.7	커피(1병, 175g)	8.4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2.3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9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2,153.8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이하, 현지-서울)	1.4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2,307.7	11.8	특급우편(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159.8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없음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3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무료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
6.1	TV(29인치, 칼라, 범용)	600			
6.2	VTR(6헤드, 범용)	없음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292.3			
6.4	전자레인지	138.5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1,076.9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1,969.2			

□ 도시 : 오슬로(노르웨이)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3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2,846.2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1,562	18.2	상여금(월 급여 대비%, 연간)	10.2%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없음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7.8%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21,00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5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21,00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42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21,000	18.6	연간국경일	10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 (비회원, 18홀, 1라운드)	69.2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1주일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3,076.9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37.5 시간
13.3	골프공(1타)	69.2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692.3	19.1	법정최저자금	15,384.6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38.3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461.5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13.8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28%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28%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없음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5.5%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19.2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19.2			
14.4	치과(스켈링, 1회)	76.9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2.3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27.8			
15.2	한국신문(1개월)	100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27.1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5.8			
	16. 호텔				
16.1	특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83.8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53.1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52.3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05.4			
16.5	조식 (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7.7			
16.6	조식 (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6.2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4,281.8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3,692.3			

7. 교통/통신

가. 항공 및 공항-시내 교통

□ 항공 교통

우리나라와 노르웨이간에는 직항편이 없어 서울에서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를 경유하여 오슬로에 도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노선이 현지 대기시간이 길고 오슬로 도착이 오후 11시 전후 시간이 되어 불편함.

현재 대한항공은 오슬로 시내에 에이전트 업체를 통해 서울 왕복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평소 왕복요금이 NOK9,600내외, 하한기 등 비수기에는 왕복 NOK8,400의 최저요금을 제시하고 있음. 오슬로에서 대륙간이나 장거리 도시와의 직항로는 없고 대부분이 스톡홀름이나 코펜하겐을 경유하여야 함. 이는 직항로를 개설하기에는 승객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항공사는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 노르게(SAS Norge)임

□ 공항-시내 연결

오슬로 Gadermoen국제공항은 시내 동북쪽 약 50Km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와의 교통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편한 점이 되고 있으나 연계 교통수단이 잘 마련되어 있어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이를 극복할 수도 있음

□ 공항버스 이용

오슬로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공항청사 앞에 각 지역 별로 운행되는 고급 공항버스가 대기하고 있는데 일련번호 1번부터 30번까지 팻말을 보고 각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운행되는 버스에 탑승하면 됨

승차료는 크로네화를 기사에게 직접 지불하는데 필요시 영수증도 현장에서 바로 발급해 줌. 요금은 거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시내까지는 대부분 NOK100선임. 단기 체류자라면 공항에서 왕복티켓을 구입하면 NOK150으로 약간의 절약이 가능함

□ 직행철도 이용

국제공항과 오슬로 중앙역, 국립극장, 오슬로 외곽지역인 Sandvika까지 직행철도가 운행되고 있음. 직행전철이기 때문에 시내중심지인 중앙역까지 약 2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으며 운행 편수 중 일부는 노선을 연장하여 국립극장, Sandvika 및 Drammen시까지도 운행되고 있음. 운행시간은 새벽 5시부터 자정 이후(00:20)까지이며 운행간격은 대략 15분 간격이므로 대기시간이 길지 않고 요금도 NOK170 이기 때문에 부담도 크지 않음.

□ 택시 이용

공항과 시내간의 교통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음. 그러나 공항과 시내간의 거리가 약 50Km로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요금이 NOK700까지 올라갈 수 있어 상당히 비싼편이며 소요시간도 약 35분으로 직행철도보다 더 걸림.

□ 시내 교통

오늘로 시내에는 버스, 지하철(전철), 시내전차, 택시의 4가지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되며, 택시를 제외한 3가지 대중 교통수단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방향으로도 연결이 가능함. 1회 이용요금은 성인이 NOK20이며 승차한지 1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한장의 티켓으로 버스, 지하철, 시내전차를 계속하여 갈아탈 수 있음.

장기 거주자라면 오늘로 시내 정기승차권인 월정권(NOK720)을 구입하여 이용하면 언제든지 대중 교통편 승차가 가능해 경제적임. 단기체류 관광객이나 비즈니스 방문객들은 1일권, 3일권, 1주일권의 승차권 구입이 가능하고 간헐적인 대중교통편 이용자들에게는 8차례 승차가 가능한 Flexi Card를(NOK150)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임.

□ 지하철

오늘로 시내 국립극장-중앙역간에는 지하철로 운행되고 외곽지역에는 전철로 운행되는데 각 방면으로 5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음. 이들 5개 노선의 전철은 상기한 시내구간의 철도를 지역별로 분할하여 공동으로 운행되므로 노선이 중복된 역에서 목적지로 운행되는 노선을 갈아탈 수 있음.

□ 시내버스

공영제 버스체제로 오늘로시 외곽지역에서 시내 전철 또는 전차노선과 연계하여 운행됨. 구간별 운행버스 노선의 번호와 정류장 도착시간 등이 스케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중앙역이나 각 지하철역 등에서 교통편 운행시간표를 얻어 소지하고 다니면 대기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음.

□ 전차

오늘로 시내에는 도로상의 철길을 이용하는 전차가 아직도 운행되고 있음. 속도는 느리지만 버스 정류소나 지하철역 등을 연계하는 운영으로 통행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일부 노선은 오늘로 시내를 벗어나 외곽지역까지 운행되기도 함

□ 택시

Benz등 고급 중형이상 차종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는 좋으나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 흠. 기본요금은 짐, 승객수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NOK20부터 시작되며, 시내에서 시 경계 지역까지 대략 5-6km 승차하는 경우 NOK120정도가 쉽게 넘어감. 모든 택시는 콜제도를 통해 운영되므로 호텔 데스크에 요청하면 지정된 시간에 도착하여 승객을 모시며 택시정류장에서도 탑승이 가능함. 다만 콜을 할 경우 요금이 콜 당시의 출발지에서부터 시작됨으로 실제 이용한 거리보다 비싼 것이 흠임. 인원이 많은 경우 버스타кси(9-10명)를 부르면 되는데 이 경우는 미터 요금의 두배를 지불해야 함

나. 국제통신

노르웨이의 국제전화 식별번호는 00을 사용하므로 한국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에는 00번을 누르고 국가번호, 지역번호, 전화번호를 누르면 됨 (서울 경우 : 00+82+2+전화번호)

국제통화료는 국영 Telenor사 등 몇몇 통신회사의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통화료가 매우 비싼 편임. 노르웨이의 전화번호는 8자리로 이중 앞 두자리는 지역번호 성격이지만 같은 지역에서 통화하는 경우에도 이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지역번호를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므로 전국이 모두 8자리 전화번호 체제로 운영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편리함

산악과 넓은 국토로 유선통신에 비해 이동통신이 발달해 있어 국민의 85%이상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고 유선이나 이동통신이나 국제통화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함. 이동통신이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시내 공중전화가 크게 위축되어 오슬로 외곽지역에서는 쉽게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중전화에서도 동전을 이용하여 국제통화를 할 수 있음

최근에는 시내중심가의 상점에서 NOK80를 주고 인터넷전화카드를 사면 한국과 400분을 통화를 할 수 있어 현지 교민이나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음

다. 국내통화

노르웨이의 통신망은 국영 Telenor사가 시설을 독점하고 있으나 회선임차를 통해 통신업을 영위하는 Tele2, Enitel, Netcom사 등 민간통신 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최근에는 통화료가 인화되는 추세임

국내 통신요금은 접속료 NOK0.54와 1분당 NOK0.24가 추가되는데 전국이 모두 동일한 요금 체계 하에서 운영되며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통화료가 할인(NOK0.17)됨. 공중전화는 오슬로 시내통화의 경우에는 동전 NOK3, 여타지역 통화의 경우에는 NOK5를 넣고 통화를 시작할 수 있으며 통화 중에 추가 동전을 투입하면서 통화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 전국이 단일통화권으로 전화번호의 앞 두자리수가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나 통화 시에는 지역구분 없이 8자리를 모두 사용해야 함

라. 우편

국내편지는 통상 1-2일 소요되며 비용은 NOK6(0.9불)이며 국제편지는 유럽인 경우는 NOK9.5(1.5불), 한국은 NOK10.5(1.6불)이 소요됨. 등기우편인 경우는 상기 비용 외에 국내인 경우는 NOK49(7.5불), 해외인 경우는 NOK59(9불)이 추가로 소요됨.

특사배달로는 DHL, UPS, TNT 등이 있으며 정부특사우편인 EMS서비스는 최근에 없어졌음.

통상 우송기간은 한국기준으로 3-4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무게에 따라 다름

무게(g)	DHL	TNT
300이하	NOK640	NOK670
500이하	NOK815	NOK850
1Kg이하	NOK1,035	NOK1,249

적용환율: US\$1=NOK6.2

8. 호텔/식당

가. 호텔

□ 개 요

노르웨이는 북구지역에서도 호텔비가 비싼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시즌별로도 가격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Radisson SAS Plaza Hotel이나 SAS Scandinavia Hotel 등 대형 호텔은 손꼽을 정도로 숫자가 적은 반면, 중소규모의 작지만 아담하고 조용한 호텔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시기별로는 노르웨이 국민들이 휴가에 접어들어 출국하는 휴가시즌(6월초-8월초)에는 정상요금의 절반수준까지도 할인되지만 여타 기간 중에는 대부분 규정요금을 적용하는 관계로 상당히 비싼편임. 호텔 요금은 평균적으로 특급호텔의 경우 Nkr 1300-1500, 중급 호텔은 Nkr 800-1,000수준이나 계절별로, 또는 현지 행사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예약 시 반드시 요금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호텔 요금에는 모두 세금과 간단한 아침식사가 포함되어 있음.

노르웨이 내 호텔예약은 여행사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며 비즈니스 목적으로 출장 시에는 무역관을 통해 예약할 경우에는 정상요금의 25%정도 할인되는 Diplomatic Rate를 받을 수도 있으나 할인시즌이나 기타 특별요금 적용 기간 등에는 동 요금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 가능하면 사전에 호텔측과 협상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일반 호텔

호텔명	주소	전화번호
Grand Hotel (오슬로 시내 중심지의 고풍스런 호텔로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묵는 것으로 유명)	Karl Johansgate 31 www.grand.no	23 21 20 00
Radisson SAS Hotel (오슬로 시내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최고층 유리건물의 고급호텔)	Sonja Henies Plass 3 www.radissonsas.com	22 05 80 00
Holmenkollen Park Hotel (오슬로 피요르드 전경이 탁월한 홀멘콜렌 스키점프대 옆에 위치)	Kongveien 26 www.holmenkollenparkhotel.no	22 92 20 00
SAS Scandinavia Hotel (왕궁옆에 위치한 고급호텔로서 비즈니스 여행객이 많이 투숙)	Holbergsgata 30 www.radissonsas.com	23 29 30 00
Continental Hotel (오슬로 시내 변화가의 고급 호텔로 시내 중심지에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	Stortingsgaten 24 www.hotel-continental.no	22 82 40 00
Hotel Europa Rainbow (호텔체인으로 무역관의 인근에 위치)	St. Olavsgate 31	23 25 63 00

Carlton Hotel (노르웨이 무역진흥기관 Inovation Norge의 뒷면에 위치한 중급으로 저렴한)	Parkveien 78	23 27 40 00
IMI Hotel (시내 왕궁 옆에 위치하는 호텔로 장기 투숙자들이 자체 숙박이 가능)	Staffeldtsgt 4	22 20 53 30
Gabelshus Hotel (담쟁이 넝쿨이 건물을 뒤덮고 있는 아늑하며 서비스가 좋은 소형호텔)	Gabelsgate 16	23 27 65 00
Scandic Hotel (옛 국제공항인 Fornebu 지역 인근 오슬로 외곽 주택가에 위치한 호텔)	Drammensveien 507	67 12 17 40
Hotel Opera (오슬로 중앙역에 인접하여 교통이 매우 편리함)	Christian Frederiks pl 5 www.rainbow-hotels.no/opera	24 10 30 00

비즈니스 여행시 추천대상 호텔은 SAS Scandinavia, Hotel Europa, Hotel Opera등임.

□ 유스호스텔

오슬로 시내에 1개, 오슬로 외곽지역에 2개의 유스호스텔이 있으나 연중 예약이 넘쳐 룸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룸 확보가 가능

호텔명	주소	전화번호
Oslo Vandrerhjem Haraldsheim (오슬로시내 북쪽에 위치한 북유럽 최대의 호스텔)	Haraldsheimveien 4 www.haraldsheim.oslo.no	22 22 29 65
Oslo Vandrerhjem Holtekilen (오슬로 교외 옛 공항 근처에 위치 하고 있는 호스텔, 교통불편이 다소 문제)	1320 Stabekk	67 51 80 40
Oslo Hostel Roeningen YMCA	Myrerskogveien 52B 0495 Oslo	21 02 36 03
오슬로시 북동지역에 위치	www.oslohostel.com	

나. 식당

□ 개요

노르웨이 오슬로 시내에는 현재 2개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으며 이중 하나는 일식을 겸하고 있어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며 하나는 주로 분식만을 판매하고 있어 주간에만 영업을 하고 있음. 그 외 여름철에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한국인 식당이 개점을 함. 일반적으로 노르웨이 식당의 음식값은 예상한 것 보다는 상당히 비싼 수준이며 음식값에 5% 내외의 봉사료를 더하여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며, 대부분의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받고 있음.

식당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일부 인기 있는 식당들은 연중 붐비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수적임. 또한 저녁만 하는 식당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개점시간도 각 식당마다 상이하므로 손님초대나 점심약속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확인하는 준비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한 식

식 당 명	주 소	전화번호
남강(Restaurant Sushi Namkang) 일식 및 한식, 저녁식사만 가능	Torggata 24	22 20 19 40
카페 53(cafe53) 분식만 판매, 점심시간에만 영업	Storgt 53	22 36 09 10

중 식

식 당 명	주 소	전화번호
Dinner (디너) (현지인, 외국인 모두에게 인기 만점의 고급 중식 식당, 오후2시부터 개소)	Stortingsgate 22	22 42 68 90
Golden Mountain (시청 앞 광장에 위치, 홀이 넓으며 중식도 가능)	Fr.Nansens Pl.4	22 42 53 62
Beijing Palace (중국식 덤섬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중급 식당)	Torgata 18	22 20 79 04
Shanghai House (음식맛은 수준급이며 가격도 저렴하나 시설은 보통급)	Pilestredet 63 B	22 60 20 06

일 식

식 당 명	주 소	전화번호
Nippon Art (전통 일식을 제공하는 고급식당, 시청 옆에 위치, 점심도 가능)	Tordenskioldsgate 8 www.eatout.no	22 41 41 07
Shogun (스시 전문의 일식집 (점심 가능), 여름철 관광객 위주 점심 식사처)	Observatoriegata 2B	22 44 07 45
Fuji (중국인 경영 고급 일식집으로 가격에 비해 맛은 다소 부족)	Munkedamsveien 100	22 43 11 80
East (대중적 일식집으로 오슬로 시내 3곳, 전국에 7개의 체인점운영)	brygetorget 7	22 83 63 51

현지식

식 당 명	주 소	전화번호
D/S Louise (오슬로 항구 변화가에 있는 서양식 고급식당)	Stranden 3	22 83 00 60
Blom (생선 및 육류 등 서양식 고급식당, 점심시간에는 생선 중심 부페식 제공)	Karl Johansgate 41-B	22 42 73 00
mona Lisa. (프랑스, 이태리 식, 노르웨이 식 등을 제공하는 고급 식당)	Grensen 10	22 42 89 14
Mama Rosa (칼요한 거리 남쪽(왕궁 반대 편)에 위치한 전통 이태리 식 고급식당)	Ovre Slottsgate 12	22 42 01 30
Le Canard Pres. (프랑스식 고급식당. 여름철 에는 해산물요리도 가능)	Harbitzgt. 12	22 43 40 28
Holmenkollen (홀멘콜렌 스키점프대 가는 길에 위치, 여름철 피요르드 전망이 탁월)	Holmenkollenvn 119	22 14 39 31

다. 기타

시내 중심지인 왕국 앞의 Karl Johan Gate 주위에는 상가와 음식점, 각종 카페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므로 취향과 식성에 따라 선택하기 쉬운 이점이 있음.

이밖에 우리 입맛에 익숙한 미국식 패스트푸드점인 McDonald, Burger King, TGI Fridays 등이 있음.

노르웨이 정부의 양계농민 보호를 위한 닭고기 수입규제 여파로 대중적인 KFC는 현지에 진출해 있지 않으나, 노르웨이 식 각종 닭고기 요리점은 흔히 있음.

9. 관공서 관행

가. 민원처리 시간

각 기관 별로 서로 상이하나 대부분의 민원처리 시간대는 08:00 - 15:00 이다. 그러나 기관 별로 또는 요일 별로 상이한 민원처리 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 하는 습관이 필요함. 관공서마다 번호표를 나누어 주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긴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시간절약을 위해서는 아침 일찍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임.

나. 민원처리 관습

인구가 적어 관공서의 민원처리가 복잡하거나 분주하지는 않으나 대부분 입구주변에 도착 순서대로 번호표를 가질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 놓고, 번호 순서대로 처리함. 그러나 자동차 등록소나 외국인 주민등록소등에서는 민원인이 많아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침 일찍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함.

그러나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처리토록 하지는 않고 있어 담당자나 민원의 성격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함. 참고로 현지에 새로 이주한 외국인의 경우 주민번호를 신청해서 받기까지는 평균 2-3주가 걸림.

또한 주민등록기관에서는 노르웨이 국민과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만 등록을 받으며 외국 공관 등 현지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구좌를 개설할 은행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최소 3주정도가 소요됨.

관공서 및 일반 민원행정기관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대한 조직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업무처리 시간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능률성이나 신속성은 상당히 떨어짐. 그러나 신청된 민원은 시간은 걸리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공무원들의 결근이나 담당자 교육연수 참가, 장기 휴가 실시 등이 수시로 발생되어 그만큼 민원처리가 늦어지기도 하는데, 특히 여름휴가철인 6-8월 기간 중에는 3주-4주씩, 12월 중순 이후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2-3주씩 장기 휴가를 갖기 때문에 그만큼 민원처리도 지연될 수 있음

휴가 기간 중에는 물론 임시직원들로 대체하여 민원을 처리하지만 자신의 책임한계를 벗어나는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 책임이 있는 실무 담당자가 복귀할 때까지는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다.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미리 약속을 하고 방문하는 경우에는 약속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필수적임. 일반적으로 약속시간보다 5분 전후까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으나 너무 빠르거나 늦을 경우에는 결례로 인식되고 있음.

노르웨이 공무원 사회는 깨끗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어 청탁이나 선물을 통해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민원사항의 논리적 당연성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이 가장 유효하며 서로간의 신뢰감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됨

따라서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작은 규모의 저렴한 것 또는 회사의 기념품 등 순수한 선물수준에 그쳐야 하며, 선물을 할 때에도 관공서나 단체에 하는 것인지 또는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은행이나 관공서 방문 시 적은 기념품 등의 선물은 인간적 관계를 쉽게 돈독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활용하면 좋음

일반적으로 친분이 유지되는 개인간에는 주류, 꽃등이 선물용품으로 선호되는데 한국적 특산물 등을 선물하는 경우 환영을 받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직접 선물을 개봉하면서 감사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 태도라 하겠음

10. 공휴일

2006년 공휴일 내역

1. 1	New Year' s Day (신년휴일)
4.13 - 4.17	Easter Holiday (부활절 연휴)
5. 1	Labor Day(노동절)
5. 17	Constitution Day(헌법제정기념일)
5. 25	Ascension Day(예수승천일)
6.4-6.5	Whit Monday(성신강림절)
12. 25	X-Mas(성탄절)
12. 26	Boxing Day(성탄 연휴일)

가. 2006년 출장지양 기간

1) 4월 중순

부활절 연휴기간인 4월 2째 주와 3째주는 노르웨이의 학교는 방학을 실시하며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휴가를 사용하여 여행을 떠나는 봄맞이 휴가기간임. 따라서 세일즈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의 현지 방문 시 목적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동기간은 피하는 것이 현명함

2) 5월 중순

노동절, 헌법기념일, 종교기념일등이 산재해 있는 5월에는 샌드위치데이가 많아 당해 휴일부터 주말까지를 연휴로 활용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므로 비즈니스 상담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출장계획을 수립하는 준비성이 필요함

3) 여름휴가기간

길고도 어두운 겨울의 영향으로 노르웨이인들은 여름휴가를 태양이 강한 이태리나 스페인 등으로 장기 휴가를 떠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여름휴가 기간에는 좀처럼 비즈니스 상담을 성사시키기가 어려우며, 상담약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특히 2002년부터는 기존 근로자 법정 휴가일수가 4주에서 5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여름철 휴가시즌에는 비즈니스 상담이 더욱 한산해지고 있음.

4) 9월 하순

노르웨이 학교는 개학 후 1개월이 지난 9월 마지막 주 1주일간 방학을 실시하며, 자녀를 둔 많은 직장인들은 이 기간 중에 휴가를 사용함. 따라서 비즈니스 목적의 현지 출장 시에는 상대방의 근무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준비성이 필요함

5) 크리스마스시즌

노르웨이인들은 X-Mas시즌에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전통이 있으므로 크리

스마스 휴일 전후부터 연말연시에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장기 연휴를 즐기는 상황임. 대부분의 회사들도 12월 10일을 전후하여 연간 사업을 마무리함. 따라서 크리스마스 시작 2주일 전부터 1월 첫째주까지는 비즈니스상담이 극히 어려운 기간이며 중요한 상담 등 서로간에 부담이 가는 내용의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이 시기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의복 준비

북구에 위치한 노르웨이는 일부 북쪽 내륙지방을 제외하고는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강한 추위는 없음. 여름에는 매우 쾌적한 기온을 유지하여 우리나라 춘추복 정도의 의류만 준비해도 별 무리는 없으나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겨울철에는 레인코트, 스웨터나 방한용 자켓, 우산,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특수바닥 신발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9월 중순경만 되면 낮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날씨도 우리나라 초겨울 정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게 되고 또한 비가 자주 오는 날씨가 되므로 간소매의 가벼운 방한용 의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음. 또한 가능한 방풍과 방습을 겸한 자켓을 준비하는 것이 짐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라 하겠음.

나. 전기규격

노르웨이의 전기규격은 220Volt, 50Hz로서 유럽대륙과 동일함. 전기 자체는 수력 의존율이 99%로 강우량에 따라 전력료의 등락폭이 큼. 최근에는 강우량이 적어 발전용 저수율이 낮아 전력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에 대비한 저수율 증가에 노르웨이 전력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다. 여행여건

1) 치안

노르웨이 국민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치안인 것 같음. 밤낮 구분 없이 시내 어느 곳이나 보행이 가능할 정도이며 밤에는 상의 위에 야광띠를 부착하여 차량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음.

다만 오슬로 시내에서 중앙역을 기점으로 동부지역에는 최근 동구 및 베트남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어 좀도둑들이 성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치안에는 문제가 없음. 그러나 최근에는 동구지역 인구의 유입증가와 함께 치안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야간에는 으스스한 골목길이나 외진지역으로의 산책 등은 자제하는 것이 보다 안전함. 또한 오슬로 공항과 시내 중앙역 등지의 경우에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동구지역에서 유입된 소매치기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소지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함

2) 택시

노르웨이 특히 오슬로 시내 택시는 요금이 매우 비싸 노르웨이인들도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인데 택시가 승용차 형태도 있고 미니버스 형태도 있어 탑승인원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요금은 동일함. 택시 대신에 트램(전차), 시내버스, 지하철 등의 노선이 유기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산등성이 지역이라 하더라도 30분 이내면 연계 교통편으로 시내 어느 지역이든지 도달할 수가 있음. (상세 내용은 교통/통신편 참조)

Oslo Card라는 관광객용 카드(3일권 Nkr240)를 구입하면 택시를 제외한 전철, 버스, 지하철등 시내교통편을 3일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유람선 이용과 관광지 입장 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음

3) 응급 의료서비스

응급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오슬로 시내에서 전화 22 11 80 80으로 전화하면 되며 여타 지역에서는 경찰(112), 앰블런스(113)를 호출하면 됨

4) 팁 관행

일반적으로 호텔이나 식당에서는 요금에 서비스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팁을 고려 하지 않아도 되지만, 특별히 팁을 주어야 할 상황이라면 요금의 5% 범위가 적당함. 주점의 테이블 서비스에 대하여는 특히 실외 테이블인 경우 팁이 관행화 되어 있으며 요금의 10% 미만이 적당함

5) 식수

유럽 대륙국가와는 달리 노르웨이의 식수 사정은 매우 양호하여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수가 있음. 정수된 물을 병에 담아 판매하는 것(IMSDAL)도 있으므로 취향에 따라 이용이 가능함. 정수된 식수는 슈퍼나 체인가게(Narvessen)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편임

6) 이발소

이용료가 매우 비싼편이나 시내 곳곳에서 이발소를 찾을 수 있음. 일반 이발료는 보통 Nkr300 내외 이며 동양인의 머리카락 조발기술이 미숙하여 이용 후에도 별달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음. 장기 여행자라면 220Volt용의 이발기구와 가위 등을 지참하는 것도 한 방법임.

라. 쇼핑

1) 물가

노르웨이는 높은 유통마진과 부가가치세, 복잡한 유통 구조 등으로 일반 소비재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우리나라 가격의 3배 이상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그렇지만 10월 중순 및 2월경에 광범위하게 개최되는 세일 기간 중에는 평소 가격의 반 또는 특정물품에 한해 70-80% 세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재원이라면 이 시기에 쇼핑을 주로 하지만 여행객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

2) 쇼핑 장소

오슬로 시내에는 백화점이 2개뿐이며, 대부분 전문점 형태의 상가를 형성하고 있음. 고급 유행제품은 왕궁 앞거리인 칼요한 거리와 스토르팅스 거리, 오슬로 대성당 인근의 스토르 거리에서 구입이 가능함. 최근에는 Oslo City라는 신규 집단 상가가 오슬로 중앙역 옆에 생겨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음

3) 부가세 환급

노르웨이 전국에는 2,600여 개의 Tax Free가게가(우리나라 면세점과는 다름) 있으며, Nkr300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면 면세 슬립을 발급해 주며 고객은 이 슬립을 출국 시 관세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11-20% 정도 환급해 줌. (환급 시 여권, 면세 슬립을 지참해야 하며 구매한 물건은 보여줄 필요 없음)

환급 데스크는 국제공항, 국제항구, 국제여객선 선착장 등에 모두 설치되어 있음. 오슬로 국제공항인 Gardermoen공항에서는 2층 출국장 원편에 Tax Refund확인 사무소가 있고 이곳에서 면세확인서에 확인도장을 받은 후 출국장 안쪽 환전소에서 환급을 받게 됨

4) 특산품

노르웨이 특산품으로는 특이한 문양을 넣어 손으로 짠 니트셔츠, 니트가디간, 장갑 등이 있으며 주석으로 만든 Pewter와 은제 장신구, 수가공 목각, 숲속 요정을 형상화한 Troll 등이 있음. 이밖에 연어 기름에서 추출한 Omega-3 와 청정자연에서 채취한 꿀 등이 노르웨이의 건강 특산품으로 평가되고 있음.

12. 유용한 연락처

비상연락처

비상망	전 화
응급의료 요청	22 11 80 80 (Legevakt)
경찰 호출	112
소방서	110
구급차	113
국내전화번호안내	180
분실물 신고	
- 오슬로 경찰청	22 66 98 65
- 철도(NSB)	23 15 00 00
- 오슬로 시청	22 08 53 61
오슬로 공항	815 50 250
스칸디나비아 항공(SAS)	810 03 300
오슬로 중앙역(기차편 안내)	815 00 888
콜 택시(오슬로)	02323

여객선	
- Color Line	810 00 811
- DFDS Seaways AS	23 10 68 00
- Stena Line	23 17 91 00
신용카드사	
- Visa	22 01 34 20
- American Express	800 33 244
- Diners Club	23 00 10 00
- Eurocard/Mastercard	800 30 250
DHL	810 01 345
렌트카	
- Avis	81 56 90 44
- Herz	22 21 00 00
- Bisset	22 60 00 00

여행시 비상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급차를 부르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며 해당 의료 기관에서도 구급차 환자를 우선 응급처치 함.

한국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 팩스
한국 대사관	Inkognitogaten 3	22 54 70 90 (Fax 22 56 14 11)
오슬로무역관	St.Olavsgate 28	23 32 76 50 (Fax 22 11 02 70)
대우중공업지사	Vollsveien 13	67 83 24 40 (Fax 67 83 24 50)
삼성중공업지사	HakkonVII's Gate 1	22 83 37 77 (Fax 22 83 37 79)
현대중공업지사	Raadhusgata 20	22 41 09 20 (Fax 22 42 66 71)
현대미포조선	Raadhusgata 20	22 33 65 50 (Fax 22 42 66 71)
현대자동차	Ensjovn 12	22 70 60 51 (Fax 22 70 60 90)
한인회	P.O.box 1702 Vika 0121 Oslo	9583 7980(회장 핸드폰)
순복음교회목사	Odvar Solvergsvei 1	22 21 72 81 (Fax 동일)

13. 관광명소

가. 오슬로 시내 관광명소

1) Vigeland Park : 비겔란 조각공원

노르웨이 최고의 조각가 Gustav Vigeland의 조각품 200여 점이 공원에 전시되어 있으며 정면 입구로부터 보리수길, 인공 호수 위의 다리와 동상, 인간의 일생을 묘사해 놓은 분수, 121명의 남녀노소가 조각되어 있는 높이17m, 총무게 260톤의 화강암 탑 등 193점의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음. (입장료는 무료, 24시간 개방)

작가는 조각품 각각의 작가적 견해 해석을 거부하고 관람객이 각자 본인 입장에서 감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조각공원 인근에는 Vigeland가 평생 조각을 하며 생활했던 거주 가옥을 미술관으로 개조한 Vigeland Museet가 있는데 입장료는 어른 20Nkr, 학생과 어린이는 10Nkr임.

2) Det Kongelige Slott : 왕궁

Karl Johan 거리를 내려다 보듯이 언덕 위에 서 있는 브라운색 건물로 1822년 착공되어 1848년 완공되었는데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방향과 위치가 잘 고려된 건물임

왕궁 앞에는 스웨덴왕 Karl Johan의 동상이 서 있어 옛날 스웨덴 통치시대의 흔적으로 남아 있으며, 국왕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왕궁내부 출입은 금지되어 있으나 뒤편의 넓은 정원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토록 개방되어 있음. 매일 13:30분에는 왕궁 위병 교대식이 실시되는데, 함께 사진 촬영은 가능하나 말을 걸지는 못함

3) Raadhuset : 시청건물

오슬로시 창립 900주년을 기념하여 1931년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1950년에 완공된 건물로 오슬로 피요르드를 내려다 보는 트윈타워로 구성되어 있음. 시청안쪽 홀에는 유럽에서 가장 크다는 유화(24mX12.6m)가 걸려있고 2층에는 뭉크의 "인생"이라는 작품과 건물 완공 시 유럽 각국이 보내온 선물들이 진열되어 있음.

1층의 대형홀은 전통적으로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개최되는 곳으로 유명함.

4) Holmenkollen Ski Jump : 스키점프대

해발 412m 정상에 우뚝 솟아 있는 새하얀 점프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에 오르면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 전 오슬로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옴. 점프대 부근에는 전 국왕 Olav V세가 애견을 데리고 크로스컨투리를 즐기는 모습의 동상이 있고, 점프대 바로 옆에는 바위에 굴을 파서 만든 스키박물관이 있는데, 2500년전 스키 도구로부터 현대식 스키장비 까지 모두 전시되어 있음

5) Akershus Slott : 아케르스후스성

오슬로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로 르네상스 양식의 궁전인데 1299년 호콘 5세 왕이 세웠으나 대화재로 불타버려 1600년대에 다시 세운 건물로써 왕의 행사에 사용되며, 왕실 사람이 죽으면 성 안에 묻힘. 1308-1716년 중 적군에 9차례나 포위되었음에도 함락되지 아니한 요새로서 성안에는 연회장, 응접실, 감옥, 선왕 무덤, 예배당 등이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 운동과 관련된 저항박물관이 입구 옆 별도 건물에 설치되어 있음.

6) Munch Museet : 뭉크미술관

1963년 뭉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관한 것이며 생전에 뭉크가 오슬로시에 기증 했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음. 기증된 작품량이 워낙 방대하여 작품을 한번에 모두 전시할 수가 없으며 수시로 해외 전시회에 대여되기 때문에 작품 배치가 자주 바뀜. 9월부터 익년 5월까지의 동절기에는 미술관이 폐쇄됨

7) Vikingshiphuset : 바이킹선박 박물관

1904년 여왕 무덤에서 발굴된 선박 Oseberg호가 전시되어 있음. 900년대에 활약하던 흘수선이 매우 낮은 고크스타트호도 전시되어 있는데 배의 크기는 길이 23m, 폭 5m나 됨

8) Norsk Folkmuseum : 민속박물관

노르웨이 전국에서 옮겨온 170채 이상의 건물이 원모양대로 복원되어 전시되어 있음. 농가 건물이 대부분이지만, 오슬로 북쪽 200km의 Gol부락에서 이전된 목조교회, 지붕에 용머리가 있는 Viking시대 건물도 전시되어 있음. 노르웨이 극작가인 입센의 서재도 오슬로 시내에서 옮겨져 전시되고 있음.

9) Fram호 박물관

난센과 아문센이 북극지방 탐험을 위해 사용했던 Fram호가 실물 그대로 전시되어 있음. 입장료는 Kr25이며 박물관이 밀집해 있는 오슬로 시내 반도지역인 Bygdeoy에 위치해 있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 접근이 가능하며 오슬로 시청 앞의 선착장에서 매시간 출발하는 페리호를 타면 20분내 도착할 수 있음.

10) Kon-Tiki Museum

노르웨이의 탐험가 Thor Heyerdahl의 원맨쇼를 보는 듯 한 박물관으로 1947년 페루를 출발하여 101일간 항해해 폴리네시아에 도착함으로써 폴리네시아인의 조상이 미주대륙인 일수도 있음을 입증한 Kon-Tiki 뗏목선 및 1970년 모로코-바베이도스간을 항해했던 RA II 파피루스선이 전시되어 있음

11) Tryvann Tower : 북악전망대

오슬로시 뒷산인 홀멘콜렌산 정상에 우뚝 솟은 타워로서 해발 538미터에 이르며,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멀리 스웨덴 국경까지도 조망할 수 있는 시설임. 오슬로 시내전철이 연결되어 있어 교통도 편리한 편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어른 35Nkr임.

나. 기타 관광명소**1) Sogne Fjord : 송내 협만 관광**

오슬로 중앙역에서 아침에 출발, 단조로운 시골 산천을 구경하면서 위르달역에 도착하여 플롬선이라는 협곡열차로 바꾸어 타고 해발 0m인 플롬에 도착, 플롬에서는 페리보트를 타고 세계에서 가장 긴 송내 피요르드(엄격히는 지선인 아울란스 만과 네뢰이 협만)를 관광하고 구드방겐에 도착, 구드방겐에서는 버스로 토빈네 폭포를 관광하고 보스에 도착, 보스에서는 열차로 베르겐으로 가거나 오슬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음.

여름철에는 협만을 항해하는 페리선박이나 플롬선 기차편이 증편되어 오슬로에서 기차를 이용해 당일 관광이 가능하나 9-5월 기간의 겨울철에는 운항편수가 제한되어 당일관광 프로

그랜은 없고 베르겐에서 야간열차로 돌아와야 함. 노르웨이 철도국은 동 관광일정을 "Norway in a Nutshell" 이라는 이름으로 "철도, 선박, 버스를 종합한 티켓"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1인당 NOK1,655이며 어린이는 1/2가격임.

2) Stavanger Fjord : 스타방게르 협만 관광

스타방게르 부근의 리세 피요르드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교회의 설교대"라는 장방형의 거대한 바위로 해발 600m 위에 놓여 있음. 바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페리 선착장에서 내려 버스와 도보로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바람이 센 날은 위험함. 유람선만 이용 시에는 3시간여, 유람선과 버스를 이용한 관광은 5-6시간이 걸림

다. 관광일정 계획

여행일정이 하루인 경우에는 오슬로 시내의 조각공원, 스키 점프대, 프람호 박물관과 해양 박물관 그리고 시청홀 정도를 보는 일정이 가장 적합함

2일정도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밖에 뭉크 박물관, Akershus성, 성내 저항박물관 정도를 추가할 수도 있겠으며, 여름철인 경우에는 송내피요르드를 다녀올 수 있는 Norway in a Nutshell 활용이 가장 합리적일 것임

3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있는 여행이라면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천연자연의 절경을 구경할 수 있는 Geilo와 Geiranger 피요르드 등을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해 볼 수 있겠음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가. 국제협약

1) 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현재 역내간 자유무역을 위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2006.9.1부터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음. 동 연합은 1959년 스톡홀름에서 영국, 덴마크 등 주요 서방국가 7개국이 서명, 시작되었으나 이후 영국, 덴마크 등 주요국가들이 탈퇴하고, EC에 가입함으로써 현재는 4개국만 남게 되었음.

2) 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EEA

1992년 5월 유럽공동체(EC) 12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7개국 및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포르투갈의 오포르토에서 협정에 서명하여 출범하였음. 본분 129개조로 구성된 EEA 협정은 상품과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을 핵심으로 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및 인권에 기초한 유럽건설, 세계적 차원의 교역자유화, 유럽의회 의원들과 EFTA국가 의회의원들과의 협력강화, EFTA국가의 EC가입 가능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노르웨이는 EEA협정에 의거 경제관련 법규는 EU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3)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노르웨이는 세계무역기구(WTO)전신인 23개의 GATT 창설 국가중의 하나로 WTO의 기본개념인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음.

나. EU규정

1) 수출입 관련 규정

EU 수입규정(Regulation 3285/94)은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공동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제한적인 시장접근을 보장함. 단, 수입상품이 EU산업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것을 예방 또는 치유하는 조치로 절차 규정에 의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을 취함.

수출도 마찬가지로 수출규정(Regulation 2063/69)에 의거, 개인과 기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석유와 가스를 제외한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을 수량제한 없이 제 3국에 수출할 수 있음. 단, 수출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이 결여될 위험성이 있거나 회원국의 공익상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위는 회원국의 요청이나 독자적인 결정으로 수출허가제도를 취할 수 있음.

2) 통상장벽 규정

통상장벽 해소를 위해 별도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주로 WTO제소 또는 WTO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양허철회, 중지, 관세인상, 수량규제 도입 등)를 취함.

3) 산업피해구제조치

산업피해구제조치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불공정한 교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될 때 자국내 산업을 보호키 위해 취하는 조치로서 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을 의미함.

상기와 같은 통상법규 이외에도 환경분야의 각종 규정과 산업분야에 있어서 각종 공업 규격과 기술표준 인증제도에 대해 EU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16.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제도

노르웨이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규모 또한 크지 않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시장선점 경쟁도 심하지 않고 수입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피해나 시장질서가 흐트러지는 사례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민보호 차원에서 일부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계절별 쿼터제도 이외에는 별도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전형적인 자유무역 정책 추진국가 중의 하나임.

EU나 EFTA제국 및 동구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여타 개도국 으로부터의 수입품도 상품별로 일반특혜관세(GSP) 제도를 통해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저율 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노르웨이의 수입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3.6%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임. 한편 농산물에 대한 수입쿼터도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계절별로 특정 농산물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며, 가축 등 산동물의 수입에 대하여는 엄격한 검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입금지 등의 특별한 규제조치는 없음. 그러나 닭고기의 경우에는 현지 양계농가의 보호를 위해 수입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있음.

수입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수입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2005.1.1부터 식료품 13%, 여타 25% 인상적용)가 부과되었으며 자국의 제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도 환급해 주고 있음. 또한 초콜릿, 알코올, 음료 및 담배에 대하여는 관세 이외에 특별소비세 (Excise Tax)가 부과되어 시중판매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도 관세는 없으나 등록세가 100% 부과되어 판매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음. 세율은 품목별, 상품별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어 국내시장 가격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일부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 GSP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수혜 범위는 완전면세, 50%감면, 15%감면, 10%감면 등 품목별로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진출규모가 미미한 식품 및 농산물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그 실효성은 거의 없으며 한-EFTA간 FTA가 발효된 2006년 9월 1일부터 한국산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진출상의 장애는 전혀 없음.

나. 수입쿼터

노르웨이는 자유무역에 근간을 둔 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나라 농산물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GSP 수혜를 주고 있음. 그러나 우리 농산물의 대노르웨이 진출이 극히 소규모인 관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음.

노르웨이는 자국 농민보호를 위해 농산물에 대해 계절별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및 식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EU 의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 등으로 노르웨이 정부는 농산물 시장도 관세인하 등의 자유화 정책을 진행시키고는 있으나 자국 국토의 균형개발 및 이농방지를 위한 지원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또한 알콜 및 담배수입도 국가가 독점해 왔으나 수입을 개방하는 대신 알콜류의 소매분야는 계속 국가독점을 유지하고 있음. 이밖에 일부 통신기기 등의 수입을 국영 통신회사인 Telenor 가 독점한 사례도 있으나 이제는 자유화 되었음. 이처럼 특정 품목에 대해 국가의 독점제 운영 등이 예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규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움.

한편 CE 마크나 의약품 등록제, 검역법에 의한 산 가축수입 제한 등은 법률에 의한 수입 절차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수입규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한국산에 대한 별도의 수입규제 조치는 현재 없다고 할 수 있음.

17. 관세제도

가. 관세제도 개황

노르웨이 관세제도는 EU, EFTA 및 동구유럽 국가와 여타 국가에 대해 차별적 관세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여타 국가들 중 개도국에 대하여 GSP제도를 운영하며 평균관세율도 3.6%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고 국내 유통마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입관세의 차이가 수입에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모든 관세적용 대상 상품에 CIF 증가세를 기준으로 해당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하여는 종량세(Kg당)를 적용하기도 함. 한편 Software제품에 대한 관세 적용은 디스켓 내용물에 대한 관련 WTO 규칙을 원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자국의 산업보호 및 이익을 위해 덤핑이나 정부지원 보조품목으로 자국산업 및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에는 수입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며 필요 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도 하나 최근에 실제 시행된 경우는 없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필요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년마다 재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동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재무부로 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입품이 일정한도 이상 증가하거나 WTO 규정에 정해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될 경우에는 국왕이 이에 상응하여 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농산물의 경우 관세는 대부분 무게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를 택하고 있는데 수분이 제거된 물품은 건조품으로서 관세율이 적용되며 수분의 포함 정도에 따라 관세율을 조정하지는 않고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

이 외에도 선박기자재, 항공기 부품 및 국가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의 수입시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재난 구조장비, 철도운송 관련제품 등의 경우에도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 또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중간재의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일정액을 환급해 주며, 수입시 이미 파손된 제품에 대해서는 감세를 해주는 등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2006년 9월 1일부터 한-EFTA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산의 노르웨이 진출은 관세부담이 단계적으로 철폐됨.

나. 주요 관세율

주요 공산품에 대한 평균적인 관세율은 다음과 같음.

- 생선(활어) : 무세
- 채소류, 식물 : 0.1 - 75% (계절별 상이)
- 종이류 : 0 - 5%
- 실크직물 : 0%
- 면직물 : 0 - 13.6%
- 장섬유직물 : 0 - 18.1%

- 단섬유직물 : 4.4%
- 섬유 의류 : 19.4%
- 철강제품 : 0%
- 금속기구 : 0%
- 전기용품 : 0%
- 방송장비 및 기기 : 0%
- 승용차 : 0%
- 시계 & 손목시계 : 0%

18. 주요인증제도

EU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에서도 CE마크가 없는 제품은 반입 및 판매할 수가 없음.

그 외 노르웨이 표준규격으로는 Standards Norway(SN), The Norwegian Electrotechnical Committee(NEK), The Norwegian Post and Telecommunication Authority(PT)등이 있음.

SN에서는 전기와 통신분야외 모든 표준규격을 관장하고 있으며 NEK에서는 전기분야 제품에 대한 표준규격을 심사하고, PR에서는 포스트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를 다루고 있음.

19. 지적재산권

노르웨이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은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복잡하지만 1967년 WIPO 협약을 중심으로 각종 국제협정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음. 특히 노르웨이는 아직 유럽특허 기구(EPO: European Patent Organisation)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EU와의 공동체적 입장에서 동 기구의 제반 규정을 원용하고 있어 EU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과 동일함.

가. 특허권

1979년 6월 발효된 특허법률('85.5월 개정)에 의거 특허청(Patent Office)에 의해 20년간 특허권이 보호받도록 되어 있음. 노르웨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은 특허변호사를 대리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음. 노르웨이는 "파리 공업소유권 보호협약" 에의 서명국이므로 특허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간 우선적인 권리를 보호해주며 특허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년임.

특허신청 후 특허가 나오지 않을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 분쟁관련 최종 결정기관인 Oslo City Court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특허를 등록할 경우 Nkr1,000을 납부하는 외에 정부의 공고비용을 별도 부담해야 하며 20년 동안 매년 사안별로 Nkr1,500에서 Nkr5,600의 등록 유지비를 납부해야 함

나. 상표권

1961년 상표법에 의해 개인이나 법인을 불문하고 등록 즉시 독점적 상표 사용권을 가짐. 상표등록은 10년간 유효하며 갱신 시 각기 10년간 연장될 수 있음. 상표의장과 마찬가지로 상표명, 공업디자인 등도 1961년 7월 제정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데 보호기간은 15년임.

다. 저작권

1961년 5월 제정된 법률(Intellectual Achievements Act)에 의해 저작권이 보호됨. 동 법안은 문학, 과학 및 예술작품 등의 저작권에 대해 보호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동 법안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발간, 저작권의 양도 등에 대해 독점적 처분권리가 주어지나 제 3자가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사용 혹은 교육적 사용 및 의료기관에서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독점적 권리에 제약을 두고 있음.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 담보권자도 이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파산 시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담보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여타 상업적 권리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보호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본인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임

20. 소비자보호제도

노르웨이의 소비자 보호정책은 소비자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정부기구인 국립 소비자 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for Consumer Research)를 출범시킨 193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적인 소비자 보호 체계는 2차대전이후인 1950년대부터 라고 할 수 있음. 1953년에 소비자 위원회(Consumer Council)를 설립하여 소비자 보호 활동을 체계화 하였으며 1972년에는 소비자 옴부즈만(Consumer Ombudsman)을 설립하여 국가적 차원의 현대적인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음.

현재 노르웨이 Ministry of Children & Equality의 산하에 있는 상기 3개 기구가 노르웨이 소비자 보호정책 수립 및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중에서도 특히 Consumer Ombudsman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동 기관은 1972년 제정된 Market-ing Control Act의 기업들의 준수여부를 관장하면서 기업들의 부정확한 마케팅이나 소비자에 불리한 마케팅 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해 마케팅 활동의 중단이나 벌과금 부과 등의 법률적 구속력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Consumer Council은 소비자 관련 입법 및 소비자들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사회 제도적 개선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NICR은 소비자 요구사항 및 행태 등 전반적인 소비자 동향에 대한 연구 및 연구결과의 관련기관 배포 등을 통한 소비자 여론의 정책반영 등이 주요 활동 분야임.

1988년부터 제조물 책임법(Act of Product Liability)을 제정하여,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르면 상품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시 1차적인 책임은 생산자에 부과되지만 생산자가 불명확하거나 책임 추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입상이나 판매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 법에 위배되는 생산자 책임의 제한 등을 명시하는 쌍방간의 계약은 무효임. 그러나 생산자와 수입업자 등 사업자간의 사고발생시의 보상에 관한 계약은 사안별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현지에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음.

이외에도 TV 및 라디오 등 전파매체를 통한 허위,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법률을 1990년에 제정하여 Norwegian Mass Media Authority를 통해 준수여부를 관리하고 있음. 1991년에는 TV광고를 규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특히 약품이나 어린이용품의 대중매체 광고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또한 기업간의 단합을 통한 가격조정이나 시장독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1994년에 Norwegian Competition Authority를 설립하여 기업들의 전횡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 Innovation Norway

2004.1.1부로 기존의 노르웨이 관광청(The Norwegian Tourist Board), 노르웨이 무역협의회(Norwegian Trade Council), 노르웨이 산업 및 지역발전국(The Norwegian Industrial and Regional Fund), 노르웨이 투자청(the Government Consultative Office for Investors)을 통합하여 관광, 산업발전, 투자 및 무역업무를 총괄하는 Innovation Norway를 설립함

- Name: Innovation Norway (counterpart to Kotra)
- Address: Akergata 13 Box 448 Sentrum N-0104 Oslo Norway
- Tel: +47 22 00 25 00
- Fax: +47 22 00 25 01
- E-mail: post@invanor.no
- Web: www.invanor.no

□ Ministry of Trade & Industry

노르웨이 무역 및 통상분야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은 통상산업부(Trade & Industry)이며 2005. 10월 새정부 출범 이후 노동당 출신인 Mr. Odd Eriksen(50세)이 장관을 맡고 있음

- Address: Einar Gerhardsens plass 1 Postboks 8014 Dep 0030 Oslo Norway
- Tel: +47 22 24 90 90
- Fax: N/A
- E-mail: postmottak@nhd.dep.no
- Web: <http://www.odin.dep.no/nhd/norsk/bn.html>

□ Norwegian Customs & Excise

- Address: Schweigaards gate 15 Postboks 8122 Dep 0032 OSLO Norway
- Tel: +47 22 86 03 00
- Fax: N/A
- E-mail: tad@toll.no

22. 시장 특성

가. 시장규모 및 소비자특성

노르웨이는 전통적인 농수산업 중심에 선박 및 해운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유지해 오다, 1968년 북해산 원유발굴을 계기로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여 해양플랜트와 석유시추, 선박기자재, 각종 첨단 기계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음. 풍부한 석유 수출 자금을 활용하여 사회간접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의 투자가 지속되면서 노르웨이 시장도 꾸준한 성장세를 견지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력 부족, 자연환경 보전 등으로 국내산업이 일부 첨단산업 및 서비스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공산품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 중앙은행이 2.5%의 저 이자율 유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크로네화가 최근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산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수입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03년도부터 시작된 내수시장 호황은 2006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수시장 발전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노르웨이 수입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음.

노르웨이의 총 상품수입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총 Nkr3,539억 수준으로 이중 기계 및 전기전자 분야가 약 25%를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조선 및 자동차 부분이 10%를 약간 상회하고 있음. 일반 소비자용품으로는 식 음료 및 담배, 의류 및 부 제품류, 섬유직물 및 기타섬유제품이 여타 상품에 비해서는 수입규모가 큰 편임. 이러한 수입규모는 450만 수준의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1인당 구매력 측면에서는 경시할 수 없는 시장임.

노르웨이 시장은 적은 인구로 인해 주문물량이 제한적이라는데 특성을 찾을 수 있음. 총인구가 200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약 462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고 넓은 국토와 산악지형의 형준한 지세로 소비자인 인구가 각 지역에 분산해 거주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시장이 지역별로 산재해 있고 유통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물류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음.

역사적으로도 인근 노르딕국가(덴마크와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던 과거로 인해 자체적인 상술의 발달이 상당히 지연되었음. 따라서 노르웨이 바이어가 직접 공급 업체로부터 수입하기 보다는 덴마크나 스웨덴의 대형 수입상과 공동으로 수입하여 필요 물량을 분배 받는 간접적 수입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물론 이러한 간접 수입은 노르웨이의 인구가 적어 직접 수입할 경우 최소 주문량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함.

한편 소비자들의 소비특성을 보면 높은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는 관계로 젊은 층은 소득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 함으로서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연금소득을 받는 67세 이상의 노인층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 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음. 노르웨이 소비자들의 소비취향이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노르웨이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20-44세까지가 전체 인구의 35%, 45-66세까지가 25%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금생활자인 67세 이상도 약 14%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정보사회로의 이전 과정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점차 소비성향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고 있음.

한편 노르웨이 바이어들도 인근국 바이어에 의존하기 보다는 직접 공급업체와 거래를 통해 수입하고자 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수입물량이 크지 않은 관계로 수출업체와의 거래도 가격수준보다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식음료 등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유통 업체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유통구조의 변화로 중소 수입상들의 입지는 지속 축소되고 있는 추세임. 현재 대부분의 생활용품 시장은 이들 대형 유통체들이 판매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수입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음.

나. 한국상품인지도

우리나라의 대 노르웨이 수출은 연간 US\$4.5억 - 7억 수준으로 주종품목인 선박을 제외할 경우 연간 약 US\$1.5억 수준으로 약 1% 내외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2005년도 주요수출 상품은 선박, 승용차 및 타이어, 칼라 TV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 등이었으며, 2005년도에는 선박수주의 회복에 힘입어 2004년 대비 수출실적이 대폭 증가된 4.7억불을 기록함. 최근 자동차 및 부품류의 진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행용 휴대용품 및 생활용품 등의 수출이 활기를 띄고 있어 우리상품의 진출기회는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휴대폰을 중심으로 한 가전제품도 우리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선진국 유명브랜드 중심의 노르웨이 시장진출을 확대해 가고 있는 중임.

다. 유통채널

1) 유통구조 개황

노르웨이는 지형학적으로 국토중앙의 산맥으로 지역이 동서로 분리되어 있고 복잡한 피요르드 해안을 따라 촌락과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 이들 지역간의 교통이 원만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과거에는 각 지방 도시별로 독립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오슬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품목별 대형 전문점 및 다품목 할인점 등을 선두로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축하는 등 유통구조가 재정비되어 현재는 대형 체인점 중심으로 상품의 유통구조가 정착되고 있음. 이는 점차 격해지고 있는 시장경쟁 상황에 대비하여 가능한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대량 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결과로 해석됨.

2) 도매유통

도매상들은 대부분 수입상을 겸하거나 인근 덴마크나 스웨덴 수입상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시중 소매상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 노르웨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대리점이나 전문 취급점을 통해 시장관리를 하고 있음.

생선 등 해산물이나 낙농제품 등의 농산물 및 노르웨이에서 생산되는 일반 소비완제품들은 공급업체-도매상-소매상의 전통적인 유통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반해 일반 공산품 분야에서는 제조업체(혹은 수입업체)와 최종 판매처간의 직접거래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대형 유통체인점들의 시장영향력이 커지면서 도매상의 역할이 지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3) 소매유통

대도시를 중심으로 볼 때 소매유통의 가장 큰 특징은 대형 전문체인점 중심으로 상권이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임. 이들 전문점들은 대부분 체인형태로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한 물품을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공급받는데 주요 지역별 또는 상가별로 다양한 규모의 소매점 체인을 두고 있음.

일반 생활용품도 ICA, MEGA 등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복구 최대의 일반가구 및 가정용품 체인인 IKEA가 전국 주요도시에 체인을 형성하고 있음. 또한 스포츠 용품, 가전제품, DIY제품분야 등 각 분야별 시장도 체인점 형태의 유통구조가 정착되고 있음.

이러한 전국적인 유통체인망을 근간으로 노르웨이 유통구조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분야는 식품 및 생필품분야임. 현재 노르웨이 식품 및 생필품시장은 Norges Gruppen, Hakon distribusjon, Coop Norge, Rema 1000 등 4개 대형 유통체인 그룹이 전체시장의 95%이상을 점하고 있음.

모든 소매상점이 문을 닫는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의 틈새 시장을 7-ELEVEN이 광범위하게 분포 하면서 소비자들의 긴급 수요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최대의 전국적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주유소가 적극적으로 생필품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그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반해 일반적인 소매유통점의 형태인 백화점 형식은 오슬로 시내에 단 두개 밖에 없을 정도로 백화점이 차지하는 유통비중은 극히 적은 편이며, 고급품의 경우에는 브랜드별 전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음. 대형 체인점을 제외하면 일반 소매상점들은 대부분 마을단위 상가지역에 밀집해 있어 소비자들이 갖가지 물품을 원스톱 형식으로 쇼핑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음.

4) 수입품 유통구조

수입품은 이미 언급한대로 대형 수입상인 경우에는 도매상을 겸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직접 수입을 하지 않는 일부 대형 도매상등은 에이전트 형태의 소규모 수입상을 통해 제품을 조달하고 이를 소매점에 공급하고 있음. 또한 취급하는 물량이 적은 일부 수입상들은 자체가 도매상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입품을 소매점에 고정적으로 납품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특히 유명 가전제품 등은 미국 및 유럽 유명업체들의 총판 및 독점 에이전트 형태로 수입과 도매상을 겸하면서 전국에 산재한 소매점이나 전문점 형태의 소매상들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판매전략을 유지하고 있음.

체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직접 수입보다는 현지 공급업체를 통한 구매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재고부담을 회피하고 품질 관리 등 상품수입 관련 비용절감 및 A/S 등 각종 리스크 경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들 대형 체인점의 납품을 통한 대 노르웨이 수출을 원하는 우리기업들은 무엇보다도 이들 유통 체인점의 납품업체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진출유망상품

품목명(MTI 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조선기자재(746)	- LNG 선 등 현지 선박수출확대로 인한 조선기자재 수요 동반 증가	일본, 중국
가전제품(82)	- 한국산 냉장고 등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소비자 수요 증가 전망 - 2005 년 기준 전년대비 칼라 TV 261%, 냉장고 15% 증가	EU, 일본,
낚시용구(5421)	- 노르웨이사람들의 주요 취미가 낚시로 낚시용구에 대한 수요 상존 - 2005 년 기준 전년대비 14.2% 증가	일본, 중국
자동차부품(7420)	- 한국산 자동차 증가에 따른 수요 발생 - 2005 년 기준 전년대비 44% 증가	독일, 일본
타이어(3203)	- 노르웨이의 산악지형 및 도로사정으로 수요 매년 증가 - 한국산 타이어 인지도 제고 - 2005 년 기준 전년대비 2.6% 증가	미국, 프랑스, 일본
연선 및 와이어 로프(6143)	- 한국산 와이어로프의 수출 지속 증가 - 2005 년 기준 전년대비 275% 증가	중국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가. NHO

NHO는 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현재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6,000개의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음. 이는 오슬로에 있는 중앙조직외에 21개 산업별, 15개 지역 조합별로 다시 세분되어 있으며 회원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음

- NHO - Confederation of Norwegian Enterprise
- Add: Postboks 5250 Majorstuen 03 Oslo, Norway
- Tel: +47 23 08 80 00
- Fax: +47 23 08 80 01
- Internet: www.nho.no

나. ICT

노르웨이 IT업계관련 조합으로 현재 320개사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으며 IT업계 전체 매출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주요 분야는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서비스)임

- Name: IKT Norge
- Address: Drammensveien 126 Postboks 546 Skøyen 0214 Oslo Norway
- Tel: +47 22 54 27 40 -
- E-mail: mail@ikt-norge.no
- Web: www.ikt-norge.no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노르웨이에서는 바이어발굴을 위한 전문 웹사이트는 없으며 아래와 같이 신문 또는 전문 잡지 웹사이트 광고를 통해 자사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를 찾을 수 있음. 그러나 아직도 노르웨이 바이어들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 보다는 기존의 우편을 통한 마케팅에 더 익숙해 있음

- www.dn.no
 - DN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재정금융 경제전문 신문임. 동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노르웨이 비즈니스맨들이 비즈니스목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하는 웹 공간임.
- www.imarkedet.no
 - 노르웨이 비즈니스 전문 웹사이트 공간으로 노르웨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비즈니스 연결을 위한 웹 공간으로 널리 사용됨
- www.itavisen.no
 - 동 웹사이트는 IT품목 비즈니스 전문 웹사이트임
- www.start.no
 - 동 웹사이트는 인터넷전문관련 웹사이트로 인터넷관련 비즈니스를 위해서 유용함
- www.aftenposten.no
 -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신문사로 일반인은 물론 많은 비즈니스맨 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동 신문에 광고시 비즈니스 활동에 도움이 됨

25.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가. 국민성

노르웨이의 국민소득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적은 인구 수 등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3위에 올라있다. 또한 사회주의적 복지국가 개념에 입각한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세금납부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사회전체의 분위기가 사치를 배격하고 매우 검소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길 만큼 사치와 낭비의 면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한편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관공서를 출입할 경우에 속도가 다소 느리지만 일 처리는 매우 깔끔하고 정확히 처리하므로 처리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과다한 선물을 준비해서는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노르웨이 국민은 표리부동한 태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곧잘 처음에 나쁜 면 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화제로 대화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쁜 점을 언급하더라도 평상심으로 대화에 응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남녀평등이 철저하기 때문에 Lady first라는 규범이 잘 통용되지 않으며 사람을 만나면 악수를 매우 좋아하므로 첫 만남이나 헤어질 때는 반드시 상대방과의 악수를 나누는 것이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처음 자기를 소개할 경우에는 Full Name을 말하는 것이 통례이며, 다음부터는 성이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노르웨이인들은 사교적이지는 않지만 사람과 만날 때는 거의 모든 자리에서 커피를 잘 마시는데 과자가 함께 나오는 경우 특별히 먹을 수 없는 사유가 있어 부득이 이를 거절해야 하는 경우 매우 정중한 표현을 써야 한다. 특히 집에 초대되어 주부가 직접 구운 과자를 내놓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노르웨이인들은 Please나 Thank you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나. 수입관행

첫 거래 시에는 상대방과의 상호 신뢰관계 미 구축으로 인해 신용장거래가 일반적이지만 상대방과의 거래가 계속 이어지면서 신용장 발행에 대한 수수료부담과 절차상의 복잡성 등으로 신용거래나 현금(송금)거래 등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보수적이고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관계로 초기 거래량이 적거나, 조건이 까다롭더라도 최대한 수용해 주는 아량이 필요하다. 일단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현지 시장정보는 물론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다.

다. 거래시 유의사항

보수적 국민성으로 새로운 상대방에 대해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거래를 추진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상대방을 믿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에 큰 하자가 없는 한 약간의 가격차이등을 이유로 거래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노르웨이 비즈니스맨들은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를 철칙으로 여긴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의 변경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과 협상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르웨이 수입상들은 자국의 시장규모와 자신의 구매량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요청인 경우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크지 않은 국내시장으로 인해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시 기존거래선의 유무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는데 이 경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하다. 단일 품목의 경우 여러명의 바이어에게 동일 모델을 공급하게 되면 현지시장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상담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현지 바이어들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으므로 거래선 변경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서로간에 공급모델의 중복회피 방안을 제시하거나 협의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비즈니스 에티켓

비즈니스 약속에 있어 시간 준수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그에 비해 복장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지나친 색상이나 패셔형태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과의 식사 시에는 특히 점심시간에는 와인을 포함해 알코올을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저녁시간이라면 특히 집에 초대되었을 경우에는 알코올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르웨이인들은 개인적인 친분이 쌓이기 전에는 식사 등의 초대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처음대면 등 서로가 마음을 터놓을 사이가 아니면 식사초대 등에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저녁시간은 개인시간으로 인식되고 현지인들 간에도 상당히 존중되므로 저녁초대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의사를 조심스럽게 타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 상담시 유의사항

노르웨이인의 보수성은 새로운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때에도 나타난다. 우선 비즈니스 상담에 응하는 것은 곧 수입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낄 정도로 상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므로 첫대면시 상담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비즈니스 상담에 응할 때에는 보기 좋은 명함을 준비해야 하며 핸드폰과 랩톱 등을 지참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신뢰성을 심어주는 방법이 된다. 또한 노르웨이인들이 즐겨 화제로 삼는 노르웨이의 날씨, 스포츠, 자연환경에 대한 소감, 한국기후와의 비교 등 가벼운 화제를 사전 준비하여 대화에 응하는 것이 좋다.

노르웨이인들은 개인 여가시간을 매우 중요시 한다. 특히 6월 중순부터 8월 첫주까지의 여름휴가 시즌에는 일체의 비즈니스를 잊고 휴가를 철저히 즐기기 때문에 이 기간중의 비즈니스 상담은 거의 불가능하며, 여타 공휴일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주말인 금요일 오후 3시부터도 대부분 퇴근을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담을 이 시간에 시작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26.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그러하듯이 인근국가와의 T/T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신용장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음. 따라서 한국업체와 가격이나 품질 등 모든 상담 조건에 만족하면서도 최종 거래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첫거래시 바이어로부터 통상 선적대금의 50% 정도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선적 후 받는 T/T 방식 등 다양한 거래조건을 가지고 상담에 임할 필요가 있음

27. 통관절차

가. 통관절차 개황

노르웨이는 자유무역주의를 대외무역 정책의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통관 절차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간편함. 현재는 대부분의 통관절차가 전산망을 통해 진행되므로 보다 간단하고 편리하며 일반적으로 통관신청 후 1-2일정도면 통관이 가능함.

통상적으로 수입업체가 통관 대행업체를 통해 수출업체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 통관 신청하면, 세관에서는 알코올, 담배 등 민감품목의 포함여부를 서면으로 체크함으로써 통관절차가 완료됨. 그러나 농산물과 식품 등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실시함.

나. 수입신고

수입업체가 세관신고서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수입을 신고하면 서류심사를 거친 후 통관 절차가 진행되는데 대부분 업체의 신고를 믿고 서류심사 위주로 통관업무가 진행되며 까다로운 실물검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통례임

그러나 식료품 및 산 동식물 등의 수입 시에는 사전에 수입신고를 하여 식품안전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 특히 식품첨가제등의 경우에는 엄격한 사전 성분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검사기관은 Statens Naringsmiddeltilsyn임. 또한 무기 및 총포탄, 군수제품 및 군사 관련 기술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외무부의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함.

노르웨이 관세율 표상에 "N"자가 명기된 품목은 사전 수입신고 해당품목이며 또한 무기, 총포탄 및 군수용품 등 수입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R"자가 표기되며, 이 경우에는 일단 노르웨이내 수입이 허가되면 EU, EFTA 및 동국권 국가로의 재수출은 특별한 허가 없이 가능함.

다. 물품검사

대부분의 통관이 서류중심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일반 공산품 등의 경우에는 물품 검사를 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일부 표본검사 수준에서 이루어짐. 그러나 농산물이나 식품, 산 동식물 등의 경우에는 다소 까다로운데, 수입허가시의 사전 조사뿐만 아니라 통관시 엄격한 표본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일부 소수의 사례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산 식품류 수입에 대하여 세관당국이 물품 검사를 매우 까다롭게 한다는 불평이 교포무역인들로 부터 제기되고는 있으나 노르웨이 세관당국은 한국산 식품류에만 한정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정기적인 세관 화물검사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공산품의 세관검사는 대부분 쉽게 진행되지만 농산물이나 식품류등에 대해서는 노르웨이 세관이 검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평가됨

28. 운송

가. 국제 공항

노르웨이의 지형상 항공은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르웨이 전국에는 약 102개의 크고 작은 공항이 산재해 있으며 이중 활주로는 포장된 공항은 67개이며 비포장 활주로의 공항이 35개로서 이들은 활주로의 길이가 1,523m 이하임.

이중 주요한 22개 공항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오슬로(Gardermoen), 베르겐(Bergen), 트론하임(Trondheim), 토르프(Torp)등이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 임. 이밖에 Stavanger, Kristiansand 등 전국 주요 거점도시 공항들이 국내선의 주요 공항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부정기적인 국제선 여객의 공항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그러나 오슬로에서 유럽대륙이나 여타 국가로의 국제 항공편은 승객수의 부족으로 인해 직항편은 극히 드문 편이며 대부분의 국제선이 코펜하겐이나 스톡홀름에서 환승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98년 10월에 오슬로 국제공항을 시 북쪽 외곽 50Km밖의 Gardermoen에 새로 신축하여 이전 하고, 시내와 공항간을 고속철도로 연결시켰으나 이용 불편 등의 요인으로 최근에는 시내에 제2의 터미널을 세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음. 또한 유럽 대륙에서 오슬로로 오는 항로중 비교적 저렴한 항로는 오슬로에서 1시간 30분 거리의 남쪽에 위치한 Torp 공항에 기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행시 주의를 요함

나. 국제 항구

세계 수산업의 중심지이며 피요르드식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의 지형적 특성상 해상 교통은 상당히 발달해 있음. 현재 노르웨이의 서해안을 따라 2.4 m 이상의 배들이 다닐수 있는 총 1,577 Km의 수로가 개발되어 있음

주요 항구로는 오슬로(Oslo), 드라멘(Drammen), 스타방게르(Stavanger), 베르겐(Bergen), 크리스티안산드 (Kristiansand) 등이 있음. 이중 오슬로 항이 가장 크며 노르웨이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1/4을 취급하며, 노르웨이 최대 여객항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항구별로 지역산업이나 특성에 따라 특화된 부문도 있는데 항구별로는 드라멘 (Drammen)항은 자동차 및 컨테이너 화물, 스타방게르(Stavanger)항은 오일과 가스, 석유 시추 장비 등 Off-shore 화물을 주로 취급하며, 베르겐(Bergen)항은 농수산물의 주요 항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주요 국제항구: Bergen, Drammen, Floro, Hammerfest, Harstad, Haugesund, Kristiansand, Larvik, Narvik, Oslo, Porsgrunn, Stavanger, Tromso, Trondheim 등

다.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 리스트

1) 항공사

- SAS Braathens
 - SAS Braathens은 2004년 SAS와 노르웨이의 Braathens사와 합병되어 만들어진 항공사로 북구에서 가장 큰 항공사임. 현재 본사는 스톡홀름에 있으며 오슬로에는 지사를 두고 있음.
- Norwegian AS
 - 2002년 저가의 국내항공만을 목적으로 취항을 개시하였으며 현재는 런던 등 주요 유럽 46개 도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보잉 737-300기종의 14대 항공기를 운행하고 있음.
 - Name: Corporate Head Office / Norwegian
 - Address: P.O. Box 115 N-1330 Fornebu Norway
 - Tel: +47 67593000
 - e-mail: post@norwegian.no
 - Web: www.norwegian.no

- Media Contact
- Anne Grete Ellingsen
- Tel: +47 91 53 70 79
- e-mail: anne.grete.ellingsen@norwegian.no

2) 선박회사

노르웨이에는 세계적 규모의 선사들이 많으며 그중 대표적인 기업으로 Wilh.Wilhelmsen ASA, Odfjell사 등을 들 수 있음. 그 외 통관회사들은 다수 있으며 주요 회사 리스트들은 아래와 같음

- Name: Wilh. Wilhelmsen ASA
 - Adress: Strandveien 20 NO-1366 Lysaker P.O.Box 33 NO-1324 Lysaker Norway
 - Switchboard: +47 67 58 40 00
 - Telefax: +47 67 58 40 80
 - E-mail: ww-group@ww-group.com
 - Web: www.ww-group.com
 - Wilh. Wilhelmsen ASA Corporate Communication, Telefax: +47 67 58 44 96
- Name: Odfjell ASA
 - Address: Conrad Mohrs veg 29 P.O Box 6101 Postterminalen N-5892 Bergen Norway
 - Phone: +47 55 27 00 00
 - Fax : +47 55 28 47 41
 - E-mail: bgo.mail@odfjell.com
 - Website: <http://www.odfjell.com>

3) 통관회사

- Name: Universal Spedisjon AS
 - Adress: Skipperg. 19 0152 Oslo Norway
 - Tel: +47 23 21 34 00
 - Fax: +47 23 21 34 80
 - E-mail: mail@unisped.no
 - Web: www.unisped.no
- Name: Cargo Partner AS
 - Address: Jernkroken 16 Postboks 63 Haugenstua 0915 Oslo Norway
 - Tel: +47 24 13 40 00
 - Fax: +47 24 13 40 01
 - E-mail: cargopartner@cargopartner.no
 - Web: www.cargopartner.no
- Name: Adams Express AS
 - Address: Filipstadveien 2 P.O. Box 206 Skøyen, N-0213 Oslo Norway
 - Tel: +47 23 01 14 50
 - Fax: +47 23 01 14 51
 - E-Mail: oslo@adamsexpress.no
 - Web: www.adamsexpress.no

29. 분쟁해결 절차

노르웨이에는 무역분쟁 해결기구로 오슬로 상공회의소내 The Arbitration and Dispute Resolution Institute가 있음. 동 기구는 상업, 선박, 해양관련 사업등 국내 및 국제비즈니스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중재자로는 변호사, 판사, 대학법률전공 교수등을 임명하고 있음.

상기 중재기구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에 당사자가 동의치 않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런 경우는 현지 법원(Tiugretten)의 제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음. 외국인도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현지 법률이나 사정을 잘 아는 현지 법률에이전트를 통해 하는 것이 일반적임.

VI. 투자

30. 외국기업 투자동향

노르웨이의 대외투자 국가는 90% 이상이 EU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가장 큰 투자국은 바로 인근국인 스웨덴이며 이어서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독일 등이 뒤를 따르고 있음. EU국가 외 10대 순위 투자국에 들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2개국 뿐임. 노르웨이 투자실적은 순투자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유출에서 유입분을 상계한 잔액을 표시하기 때문에 아래표를 가지고는 어느 국가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음. 한편 사업분야별로는 최근 고유가에 힘입어 석유탐사 및 광산분야의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

외국의 노르웨이 투자 역시 스웨덴, 덴마크, 영국 등 인근국과 EU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분야 역시 석유탐사 및 광산분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붐을 중심으로 호텔, 식당 등 서비스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노르웨이 대외투자현황(국가별)

(단위: 백만NOK)

국가명	2001	2002	2003	2004
유럽	-17,427	31,598	-3,095	9,336
EU	-16,092	25,084	-3,936	10,701
스웨덴	5,211	8,085	-735	-11,388
덴마크	3,439	1,083	802	4,050
영국	3,069	436	3,863	-3,054
독일	-17,810	19,141	-2,907	-892
기타 유럽국가	-1,335	6,514	841	-1,365
캐나다 등 북미 및 남미	1,300	-2,186	5,430	-7,244
미국	-1,600	3,387	2,868	1,489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840	922	10,110	7,789
순계(Sum transactions)	-13,287	30,334	12,445	9,881

노르웨이 대외투자현황(분야별)

(단위: 백만 NOK)

분야	2001	2002	2003	2004
Oil extraction and mining	6,937	-5,226	8,683	17,053
Manufacturing	12,370	18,473	-204	387
Wholesale and retail trade, Hotels and restaurants	828	119	-37	3,331
Transport, Communication	-23,642	12,786	1,641	1,626
Bank, financing and insurance	576	3,589	1,602	-777
Business activities	-10,240	-2,723	347	-12,028
Other sectors/unallocated	-116	3,316	413	289
Sum transactions	-13,287	30,334	12,445	9,881

주1 : 2004년이 입수 가능한 가장 최신자료를 반영하고 있음.

주2 : 노르웨이는 순투자 유치개념으로 투자실적을 집계. 즉 연도별 노르웨이에 투자된 금액에서 철수된 금액을 상계

자료원 : Norwegian Central Bank

외국의 노르웨이 투자현황(국별)

(단위: 백만 NOK)

국별	2001	2002	2003	2004
유럽	18,294	2,049	10,213	-17,238
EU 국가	18,825	3,232	10,286	-18,291
스웨덴	1,719	1,358	927	9,853
덴마크	2,739	257	8,735	987
영국	3,437	2,033	1,982	1,614
독일	-1,062	-199	-619	1,523
기타 유럽	-531	-1,183	-73	1,053
캐나다 등 북미 및 남미	5,336	7,136	10,137	24,689
미국	1,069	665	1,959	27,169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123	-642	-661	-122
순계(Sum transactions)	23,507	8,543	19,689	7,329

외국의 노르웨이 투자현황(분야별)

(단위: 백만 NOK)

분야	2001	2002	2003	2004
Oil extraction and mining	9,009	7,688	1,229	-4,195
Manufacturing	3,672	-2,167	5,013	3,360
Wholesale and retail trade, Hotels and restaurants	8,397	-953	-2,152	4,519
Transport, Communication	1,472	2,078	8,292	2,877
Bank, financing and insurance	834	1,187	336	4,693
Business activities	1,528	1,621	7,421	-5,232
Other sectors/unallocated	-1,405	-911	-450	1,307
순계(Sum transactions)	23,507	8,543	19,689	7,329

주1 : 2004년이 입수 가능한 가장 최신자료를 반영하고 있음.

주2 : 노르웨이는 순 투자유치 개념으로 투자실적을 집계. 즉 연도별 노르웨이에 투자된 금액에서 철수된 금액을 상계

자료원: Norwegian Central Bank

노르웨이 기업의 대한민국 투자진출은 우리의 외투시장 개방이 본격화된 '98년부터 조선 및 선박기자재 산업, 해양물류 관련부문 및 수산업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KOTRA Invest Korea의 통계에 따르면 1983년부터 2005년 말까지 투자자금 도착 기준으로 노르웨이의 대한 투자 규모는 총 39건, U\$295백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국에 투자한 대표적인 노르웨이 기업은 세계적인 제지회사인 Norske Skogg 사가 1998년에, 선박자동화 사업부문의 선두기업인 Kongsberg Maritime 사가 1999년에, 선급인증부문의 DNV 사가 2000년에, 그리고 세계 최대 화학물질 물류업체인 Odjelli 사가 2002년에 아시아물류본부를 온산항에 설립하였으며, 2004년(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해)에는 세계 최대 자동차 운반선 사업기업인 빌헬름센사가 (주)글로벌비스의 주식 25%를 인수한 것 등을 들 수 있음.

이외에도 현재 한국투자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실제 추진중인 기업들이 상당수 있어 앞으로 노르웨이의 대한국 투자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노르웨이 산업의 특성상 투자분야가 물류 등 유통부문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건 별 투자금액 면에서는 크지 않으나 해당분야에서는 국제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건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노르웨이의 대한 투자 진출 동향

년 도	건 수	금 액(US\$천)
1998	3	156
1999	1	2,450
2000	4	586
2001	3	1,654
2002	7	147,113
2003	7	5,536
2004	7	101,663
2005	7	36,358

자료원 : Invest Korea 투자통계(2006년 6. 현재)

주 : 투자 금액은 도착기준금액임. 노르웨이 경우 투자에 대한 정보는 대외비 성으로 다루고 있어 기업별 투자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음.

31. 우리기업 투자동향

우리나라 기업의 대노르웨이 직접투자는 2004년 12월에 현대자동차가 4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판매법인을 설립한 것이 유일함. 이외에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등 조선분야 4개사가 노르웨이에 진출해 있으나 모두가 현지 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32. 투자환경

가. 투자매력도

EU국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는 국내기업과의 동일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외국인 기업에 대하여만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는 없음. 그러나 지역 개발이나 고용창출에의 기여도가 높은 투자의 경우에는 지방정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의 확보가 가능하며 스발바드제도등 북극권의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보다 광범위한 세제혜택 등을 시행하고 있음.

노르웨이는 4.6백만의 적은 인구로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인근의 EU시장을 겨냥한 투자인 경우에도 노동력의 질은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와 조세부담 등 평균적인 사업 운영 비용이 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대 노르웨이 투자진출 매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노르웨이 정부도 외국기업의 자국내 투자유치 및 자국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2004년 1월 1일부터 노르웨이의 국영 무역, 투자 등 4개 관련기관을 통합하여 Innovation Norway를 설립하여 국내외 기업들의 자국내 사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기업

들의 투자활동에 큰 제약요인이 되어왔던 7%의 투자세를 2002년 10월 1일부로 폐지하였으며 고액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지속 시행하고 있어 앞으로는 국내외 기업들의 노르웨이내 사업활동이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노르웨이 정부의 지역개발 및 중소기업육성 정책과 함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내기업과 동일대우 정책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완전히 개방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며 일반 국민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편견도 찾아볼 수 없음. 따라서 노르웨이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철도, 교통, 통신, 금융 및 보험 등 일부 국가기간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완전개방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금년 3월에는 행정부가 금융기관 지분소유 한도를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현재 검토중이며 동 개정안의 골자는 지금까지 1명의 금융기관 소유지분을 10%로 한정하던 규정을 완화하여 50%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반면, 20%, 25%, 33% 또는 50%등 주요 단계별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여 금융기관의 지분변동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내외국인을 동일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 투자제한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사항으로는 기업지분 이전시 이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95년 법안 개정으로 승인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지분에는 제한이 없어 100% 외국인 지분 확보도 가능함. 다만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지분 취득이나 신규 금융기관 영업행위는 특별히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음

또한 공장용지의 취득, 10년 이상의 토지 리스계약, 농지의 취득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업종별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분야도 있는데 이들 분야는 의사 및 의료업, 공증업, 변호사 및 회계업, 증권업, 부동산업, 여행업등이며 운수업의 경우에는 관할 주의 승인을, 요식업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정부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투자금지분야

현재 노르웨이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금지는 일부 공공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타 분야는 거의 완전히 개방되어 있음. 다만 우편, 철도, 전화 및 기타 통신, 지하철, 공공병원에 대한 외국인투자(민간자본 투자)는 금지 또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철도부문에 있어서는 스웨덴 철도청이 국경지역의 일부 노르웨이 구간에서 기차편을 운행하고 있으며 전화통신 부문의 경우에는 국영 Telenor사가 있지만 제2, 제3의 민간통신 회사가 설립되고 있고 특히 인터넷 통신의 경우 완전 개방되어 민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사립병원과 방송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95년부터 개방되어 스웨덴 등 인근국의 투자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아직은 미미한 수준임. 이는 노르웨이 시장의 협소로 투자효과가 크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마. 투자형태

노르웨이의 일반적인 법인형태는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liability co., ASA), 개인주식회사(Private limited liability co. AS), 외국법인지사, 무한회사(Ans), 유한합자회사(K/S), J-Venture, Cooperative Venture 등이 있는데 이 중 J-Venture 를 제외하고는 모두 독립 법적 법인격을 갖게 됨.

바. 상업등록

일반적인 법인형태인 공개주식회사(ASA)의 경우는 최소자본금 규모가 Nkr100 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주식회사도 Nkr10 만의 최소자본금이 요구된다. 법인은 창립 발기 후 3 개월 이내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여 상업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후 2-4 주가 경과되면 등록이 이루어짐.

한편 법인의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록신청 전에 모두 이루어져야 하며 자본금은 현금 및 회사설비, 기계, 자동차등 회사관련 자본재 투자액도 포함됨. 등록시 동 자본금의 확보에 대해서는 현지 공인된 회계감사관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를 제출 하여야 함

사. 제반 의무규정

법인의 자본금이 NOK3 백만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 멤버는 3 인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 특히 이사회 멤버 중 과반수 이상을 노르웨이 영주권을 가진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함. 동 규정은 시민권과는 무관하고 EEA 국가 시민권자인 경우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또한 종업원이 30 명 이상일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이사회 멤버 선출권에 관한 권한을 일부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금이 NOK3 백만 미만이거나 종업원이 30 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 멤버의 수나 구성 등에 별도의 제약을 두고 있지 않음

외국인 투자법인이 판매행위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노르웨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현지인 대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통관법인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통관법인이 이를 대체할 수도 있음

아. 법인 의무

공개 상장법인 또는 과거 3 개년간 평균 종업원수가 200 명 이상인 개인주식 법인은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모든 회계장부에는 모기업 또는 관계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를 밝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종업원의 급여지불 및 산업재해에 대비한 관련 보험가입, 고용주로서의 사회보장세 납부 등 종업원 및 사회에 대한 각종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33. 투자인센티브

가. 투자유치관련 법규

노르웨이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은 특별법이나 외국기업의 우대제도를 별도로 시행하

지 않고 내외국인 동일대우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즉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투자관련 법규 및 인센티브는 모두 내외국인 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따라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투자관련 법률은 해저 원유와 천연가스탐사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 외국 업체의 과실송금 등을 일부 규정하는 것뿐이며 일반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나. 투자우대 제도

노르웨이 정부의 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는 Innovation Norway의 "노르웨이 산업 & 지역개발기금(SND)"에 의해 집행되고 있음. SND는 2004년 1월 1일부로 Norway trade Council과 병합되어 Innovation Norway의 일부가 된 기관으로 특정 기업체가 신제품 개발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Project를 노르웨이 내에서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저리자금 융자, 신용보증 또는 자본참여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노르웨이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Innovation Norway의 투자지원 파트를 통한 지원가능성 및 범위 등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세제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대우는 없고 지방정부가 특정 개발예정 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사안별로 종업원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할인 또는 면제시켜 주는 경우는 있음.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개발예정 지구내의 공장용지 또는 건물을 무상 임대해 주기도 하는 등 지역별, 케이스 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노르웨이의 전체적인 투자유치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기업들의 사회보장세 부담분에 대해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음. 즉 도시지역의 경우 고용인의 사회보장세 부담율이 14.1%인데 비해 농어촌 지역등 원거리 지방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6.4%, 혹은 5.1%만 부담시키고 있음. 특히 북부의 Nord-Troms주와 Finnmark주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대해 사회보장세 부담분을 전혀 부과하지 않으며 개인소득세 부문에 대해서도 일반여타 지역의 28%에 비해 3.5%가 낮은 24.5%를 부과하며 기초소득 공제액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고 있음.

그외에 노르웨이 중앙정부의 투자유치 우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는 북해의 Svalbard제도와 Jen Mayen제도를 들 수 있음. 이곳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은 법인세 10%와 사회보장세 8.9%가 적용되고 개인소득세가 4%, 자본세 0.2%가 적용되는 특혜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동 지역의 험한 기후와 외부와의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적인 문제로 현재까지 아무런 유치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34. 타당성조사

가. 전반적인 투자타당성 검토

풍부하고 저렴한 전력, 잘 정비된 교통망, 언어문제가 없을 정도로 높은 노르웨이 국민의 영어 구사능력, 노르웨이 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제조업 투자유치 노력등 기초적인 투자환경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자연환경 보전정책과 높은 임금수준, 완벽한 복지정책으로 일보다는 여가를 더욱 선호하는 국민정서 등이 외국인 투자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근로자 1인 고용시 연간 2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자 요청시 6.1부터 9월말 사이에 18일간의 연속휴가 부여) 전년도 총 급여의 10.2%에 상당하는 휴가비 지급, 오슬로 지역의 경우에 14.1%의 고용주세 부담(지역권별로 차등 세율 적용)등 인건비 부담이 너무 높은데 문제가 있음.

따라서 대노르웨이 투자진출은 노르웨이 시장을 목적으로한 노동 절약적인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르웨이의 첨단 산업기술 습득 등의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진출에 특별한 이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수산업 및 해양산업부문, R&D부문의 경우 지역별 투자유인 정책을 활용하면 기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성과 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나. 투자제한분야 검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사항으로는 기업지분 이전시 이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95년 법안 개정으로 승인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지분율에는 제한이 없어 100% 외국인 지분 확보도 가능함. 다만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지분 취득이나 신규 금융기관 영업행위는 특별히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음

또한 공장용지의 취득, 10년 이상의 토지 리스계약, 농지의 취득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업종별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분야도 있는데 이들 분야는 의사 및 의료업, 공증업, 변호사 및 회계업, 증권업, 부동산업, 여행업등이며 운수업의 경우에는 관할 주의 승인을, 요식업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정부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투자금지에 대한 검토

현재 노르웨이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금지는 일부 공공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타 분야는 거의 완전히 개방되어 있음. 다만 우편, 철도, 전화 및 기타 통신, 지하철, 공공병원에 대한 외국인투자(민간자본 투자)는 금지 또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철도부문에 있어서는 스웨덴 철도청이 국경지역의 일부 노르웨이 구간에서 기차편을 운행하고 있으며 전화통신 부문의 경우에는 국영 Telenor사가 있지만 제2, 제3의 민간통신 회사가 설립되고 있고 특히 인터넷 통신의 경우 완전 개방되어 민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사립병원과 방송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95년부터 개방되어 스웨덴등 인근국의 투자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아직은 미미한 수준임. 이는 노르웨이 시장의 협소로 투자효과가 크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35. 투자 진출형태 및 진출절차

가. 투자진출

1) 지사개설 개요

노르웨이 국내에서 판매 등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국기업 진출형태는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시장조사와 업무연락 기타 비영리행위에 국한된 활동목적인 경우에는 주재원 사무소(Liasion Office)의 형태를 유지할 수도 있음.

노르웨이 정부의 각종 경제규제 철폐 정책에 따라 여타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외국 모기업의 지사 설립에도 최소 자본규모와 상업등기 이외의 허가사항이나 부대 조건은 없음

2) 지사등록- 현지법인 지사설립

모국의 본사 방침에 따라 노르웨이내 현지법인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르웨이 정부 기업등록소(Register of Business Enterprises)에 소정의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록함으로써 법인 자격을 얻게 됨

모든 서류는 노르웨이어로 번역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지사설립 등록 이외 유일한 법적규제 조건의 하나는 지사책임자와 설립 이사회의 멤버중 최소한 과반수는 2년 이상 노르웨이에 체류(시민권과는 무관)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인데 EEA시민권자인 법인의 현지지사 설립 시에는 예외로 함

- 모기업 관련자료
 - 모기업 설립등기, 정관, 조직체계, 상업등록증(Certification), 지사설립 의결서
 - 모기업 업체명, 주소, 법인형태 등 법인정보
 - 모기업의 현지지사 이사회 인선 결과(있을시)
- 현지지사 관련자료
 - 지사 명칭, 주소, 법인성격(판매 또는 제조 등)
 - 지사장명, 이사회 멤버명 등
 - 현지지사 책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 모기업의 책임
 - 지사가 설립되면 지사 활동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모기업이 연대책임을 지며, 지사의 모든 서류에는 유한책임을 지는 모기업의 지사라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등록비용
 - 지사 설립 등록 시에는 소정의 등록 수수료(Nkr4,500-4,600수준)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지사설립 - 주재원사무소

주재원 사무소의 경우에는 모기업 관련자료 및 주재원 사무소 책임자 등을 명기한 서류를 정부 기업등록소에 제출하고 사무소 등록만 하면 설립절차가 완료됨. 또한 이 경우에는 주재원 사무소 책임자 및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노르웨이 내에 거주지만 가지고 있으면 됨. 주재원 사무소의 경우도 모든 법률적 책임은 모기업이 연대책임을 지는 등 여타사항은 법인 지사와 동일함

4) 지사설립 참고사항

- 지사 설립의 사전단계 조사 시에는 무비자로 3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며 현지의 단기 체류자는 월별 단위로 임차가 가능한 여행자 호텔을 이용할 수가 있음. 한달 숙박비는 약 Nkr 18,000이상 수준으로 다소 비싼 편임. (자체 요리 가능)

- 무비자 체류는 3개월간 가능하며, 3개월 소진시 재 입국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함.
- 현지 교통편은 버스, 지하철, 전차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시간도 비교적 정확히 지키므로 승용차를 반드시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렌트카도 이용 가능함
- 사무실 용도의 건물 물색은 그리 쉬운 편은 아니며 임차료는 정해진 수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건물 임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후보 대상 물건을 찾아 다녀야 경제적인 물건을 확보할 수 있음
- 지사 설립이 끝나면 체류비자를 신청해야 하므로 본국으로 출국하여 현지 노르웨이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이를 받은 후 재입국하여야 함(기타 자녀 교육여건, 주택 임차 등은 "이주.정착가이드"를 참고하기 바람)

나. 투자방식

노르웨이는 기업형태로 주식회사(limited company), 합자회사(General Partnership), 개인기업(Individual Enterprise) 3개로 나뉨

1) Limited Company: Aksjeselskap/AS)

□ 설립자본금

주식회사로서 Private Limited Company(AS)와 Public Limited Company(ASA)로 나뉨. AS 를 설립 시는 자본금 NOK100,000 이상이어야 하며, ASA 는 NOK1,000,000 이상이어야 함.

□ 기업등록

기업등록 시는 아래 4 가지 서류를 갖추어 Norwegian Register of Business Enterprise 에 정관일 기준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함. 등록비는 NOK6,030(US\$928)임

- A memorandum of Incorporation
- The articles of Association
- The opening balance sheet
- if applicable, statement of share deposit in other means than money

2) General Partnership

합자회사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은 필요 없으며 사업개시 전에 Norwegian Register of Business Enterprise 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정의 등록양식을 갖추어 Central Coordinating Register for Legal Entities 에 제출해야 함. 관련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음

- a confirmed copy of the partnership
- statement where each of the partners accepts to be registered in the Register of business Enterprises as a partner of the company
- minutes from the partner meeting where the Board of Directors is elected (파트너간 이사회를 두기로 결정했을 경우)

- minutes from the partner meeting where the company's auditor is elected(회계 감사를 두는 경우)
- a declaration of willingness from the company's auditor in original

3) Individual Enterprise

설립자본금을 필요 없으며 사업개시 전 Norwegian Register of Business Enterprise 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정의 등록양식을 갖추어 Central Coordinating Register for Legal Entities 에 제출해야 함. 등록비는 NOK2,680 (US\$412)임

36. 입지선정

가. 산업단지

노르웨이는 복잡한 피요르드 해안과 국토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산맥등의 영향으로 지역별로 경제의 분권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음. 또한 균형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산업단지로 육성하기 보다는 각 지역별 지방 정부 차원에서 도시별로 일정지역을 비즈니스지역으로 지정하여 모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는 특정 산업분야에 특화 할 경우 동 분야의 경기변동에 따라 지역경제의 부침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임.

따라서 정부나 지방정부가 특별히 개발해 놓고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공업단지는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지역별 자급자족적인 노르웨이의 기업환경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지역별로 산재해 있으며, 소규모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한 두개의 지역소재 기업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도 많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노르웨이는 도시별로 특성 있는 산업이 발달해 있음. 오슬로 및 인근 외곽에는 IT및 정보통신, 각종 소비자 용품 공장이 산재해 있고 Stavanger에는 석유. 가스산업, Bergen에는 선박기자재, Tromsø에는 수산업이 주종을 이루면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가는 양상임. 특히 최근에는 구오슬로 공항지역이었던 Fornebu지역에 IT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나. 자유무역지대

노르웨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자유무역지대는 없음. 다만 북해의 Svalbard제도 (Spitsbergen) 지역에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및 주민이주를 막기 위해 특별세제와 수출입 관련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경제적 특혜지역이라 할 수 있음

노르웨이 정부가 Svalbard제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출입관리, 직.간접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외국인의 투자 실적은 전무한 상태임. 동 지역의 경우에도 노르웨이는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동일한 혜택을 부여 하고 있음

동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10%의 법인세와 사회보장세 8.9%만 부과되며, 종업원의 소득세가 4%, 자본세(Capital Tax) 0.2% 정도가 부과되는 특혜를 받게 됨. 그러나 열악한 기후와 외부와의 연결이 어려운 지형적 한계로 노르웨이 국영 석탄채굴기업인 Store Norske Spitsbergen Kulkompani(SNSK)가 유일하며, 동 지역의 전체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음

37. 공장설립

가. 공장설립가이드

노르웨이 국내에서의 공장설립은 입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토지 취득시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주택 제외), 취득절차는 오슬로와 지방정부에 따라 다소 달리 적용되고 있음. 특히 부지구입 및 장기임차의 경우 각 관할 지역정부마다 승인규정이나 지원 정도 등이 상이하고 설립되는 분야에 따라서도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면밀한 확인작업이 필수적임.

일부 지방, 특히 인구가 적은 북부지방의 경우 지역정부가 공장유치를 위해 부지와 건물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공장부지를 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지원정책도 시행되고 있음. 이러한 모든 특혜정책은 기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에게도 제공되는 공통 투자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음

나. 공장설립절차

법인이 설립되고 생산거점인 공장건축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지역정부의 건축허가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각 지역정부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허가서류들을 일괄 패키지로 묶어 건축신청자에게 배부함으로써 행정절차상의 효율을 기하고 있음.

토지관련 사항은 각 지역별 토지관리부서(Eiendomseteten)에서 관장하며 제반 절차나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총괄함. 특히 부지의 위치나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 등에 따라서도 가격이나 허가조건이 상이함. 일반적인 건축절차는 여타 국가와 동일하나 건축설계 심사시 국가가 공인한 설계사인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함

다. 기타 유의사항

전력과 도로, 항만시설의 이용여부에 따라 적정입지를 선택하여야 하겠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허가기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특히 노르웨이 정부와 지역정부들은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혜택 제공은 물론, 공장 진입까지의 각종 사회 간접시설은 특별한 요건이 아닌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어 투자기업은 공장 내부시설에 대한 의무만 지면 됨

따라서 공장설립을 통한 Green Field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지역 관할 지역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공장설립 투자의 사례가 극히 드물어, 업종이나 지역경제에의 기여 정도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역정부로부터 공적인 지원을 상당한 수준까지 받을 수도 있음

38. 투자관련 정부기관

투자진흥 주무부서는 통산 산업성 임

□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Address: Einar Gerhardsens plass 1 P.O.Box 8014 Dep 0030 Oslo Norway
- Phone: +47 22 24 90 90
- Fax: N/A
- E-mail: postmottak@nhd.dep.no
- Web: www.odin.dep.no/nhd

2004.1.1부로 기존의 노르웨이 관광청(The Norwegian Tourist Board), 노르웨이 무역협의회, (Norwegian Trade Council), 노르웨이 산업 및 지역 발전국(The Norwegian Industrial and Regional Fund), 노르웨이 투자청(the Government Consultative Office for Investors)을 통합하여 관광, 산업발전, 투자 및 무역업무를 총괄하는 Innovation Norway를 설립하였음

□ Innovation Norway

- Name: Innovation Norway (counterpart to Kotra)
- Address: Akergata 13 Box 448 Sentrum N-0104 Oslo Norway
- Tel.: +47 22 00 25 00
- Fax: +47 22 00 25 01
- E-mail: post@invanor.no
- Web: www.invanor.no

□ Directorate of Taxes

- Central Office Foreign Tax Affairs
- add: P.O BOX8031, 4038 Stavanger, Norway
- tel: 47-51-969600
- fax: 47-51-578559
- e-mail: postkassefu@skatteetaten.no
- www.skatteetaten.no

□ The labor Inspectorate

- add: P.O BOX8174, 0034 Oslo, Norway
- tel: 47-23-080505
- fax: 47-22-22177810
- e-mail: distrikt02@arbeidstilsynet.dep.no
- www.arbeidstilsynet.no

□ The register of Business Enterprise

- add: 8910 Bronnoysund, Norway
- tel: 47-75-007500
- fax: 47-75-007501
- e-mail: firmapost@brreg.no
- www.brreg.no

39.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Innovation Norway

2004.1.1부로 기존의 노르웨이 관광청(The Norwegian Tourist Board), 노르웨이 무역협의회(Norwegian Trade Council), 노르웨이 산업 및 지역발전국(The Norwegian Industrial and Regional Fund), 노르웨이 투자청(the Government Consultative Office for Investors)를 통합하여 관광, 산업발전, 투자 및 무역업무를 총괄하는 Innovation Norway를 설립하였음

- Name: Innovation Norway (counterpart to Kotra)
- Address: Akergata 13 Box 448 Sentrum N-0104 Oslo Norway
- Tel.: +47 22 00 25 00
- Fax: +47 22 00 25 01
- E-mail: post@invanor.no
- Web: www.invanor.no

□ DLA Nordic AS

노르웨이 투자시 회계, 법률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개인 서비스 회사

- Address: Olav Vs gate 4 P0Box 1364 Vika N-0114 Oslo
- Tel.: +47 2413 1500
- Fax: +47 2413 1501
- E-mail: info@dlanordic.no
- Web: www.dlanordic.no

40. 노무관리

가. 고용환경

노르웨이 정부의 완전고용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02년 하반기부터 노르웨이 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로 실업률이 증가하여 2005년 말 현재 4.6%에 달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2006년에도 노르웨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고용 창출 효과가 적은 석유관련 산업 및 서비스 산업에의 치중으로 실업률은 4%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전문직 종사인력들의 부족현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다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따라서 전문직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현지 인력수급 사정이 원활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외국기업이 현지 인력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문광고나 인력알선 회사를 통하는 방법 등 공개적인 방법이 바람직함.

2005년 말 기준 노르웨이 총인구는 4.6백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 중 노동인력으로 평가되는 16세 이상 74세까지의 인구는 약 3,257천명으로 총인구의 약 71% 수준에 이르고 있음. 연령대 별로는 16-24세까지가 492천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0.6%를, 67세-74세까지가 258천명으로 5.6%를 점하고 있음.

2005년 말 기준으로 노동인력은 총 2,400천명으로 이중 2,289천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111천명이 실업으로 실업률이 4.6%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실업의 증가는 제조업 부문의 부진과 특히 IT부문의 침체가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전체적으로 노르웨이는 사회활동에서 남녀 차별이 없는 가장 모범적인 남녀 평등사회인 관계로 외국기업이 현지인력을 채용코자 할 경우 이점을 유념하여야 함

그리고 노르웨이 근로자는 50인 이상 작업장인 경우 노조를 결성하여 대표자 1명을 선출할 수 있으며 50인 이상 200명 이하 작업장에서는 2명의 노조대표를 200명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원 1/3이상으로 노조회의를 구성하여 노조활동을 할 수 있음. 노르웨이 기업노조의 힘은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불법적인 노조활동은 현재까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음.

나. 인력 수준

노르웨이 총인구 4.6백만 명중 약 50% 정도는 수도인 오슬로시 인근과 남부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인력이 풍부한 편이지만 북부의 Finmark, Aust-Augder 지방 등은 카운티(우리나라의 도) 총인구가 10만 명을 하회하는 인구 과소지역으로서 고용인력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되고 있음

노르웨이 근로자들은 6세부터 10년간 국가가 지원하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에도 학비는 없으므로 약 70%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직업과정 포함)와 대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있음. 또한 매년 재교육과정을 수료하는 성인들도 70만 명에 달해 문맹률이 0%에 가까운 정도로 노동력의 질적인 면에서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다. 임금 동향

노르웨이에서 가장 임금수준이 높은 분야는 석유 및 가스 채굴분야로 2005년 평균임금이(Full time 근무 기준) NOK45,600으로 전년보다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어서 금융업이 NOK38,700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함.

제조업 근로자 평균 월 임금은 2005년의 경우 Nok28,900 수준으로 2004년 대비 3.6% 상승하였음. 그러나 금년에는 정부의 강력한 물가억제 정책 및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제조업 부문 중 화학산업, 펄프 및 종이산업, 기계 및 설비, 조선 및 원유개발부문의 임금수준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섬유 및 의류, 목재 및 가구, 식음료 부문은 평균 이하임.

일반적으로 대졸 취업인력의 월 급여는 Nok24,000 - 26,000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일반 대기업의 임원급 임금은 업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대략 월 Nkr400,000에서부터 높게는 Nkr1,000,000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2005년도 분야별 임금수준

구분	평균임금(NOK)	인상률(%)
중앙정부공무원	30,000	6.1
건설업	27,900	3.4
금융업	38,700	8.4
제조업	28,900	3.6
석유 및 가스채굴	45,600	2.2
IT분야	38,100	3.7
유통업	29,300	4.4

자료원: Norwegian statistics

라. 외국인 고용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국적 노동자는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근로시작 전에 관할 경찰서에 등록만 해놓으면 됨. EEA회원 국적소지자들도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3개월 이상을 체류할 경우에는 체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이 밖의 국적소유 근로자들은 기업 단체적으로 또는 근로자 개별적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개별 노동허가는 5년 미만의 고용계약인 경우에 한함

근로자의 노동허가는 주재국 노르웨이 대사관으로부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노르웨이 국내의 State Aliens Office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음. 이 경우 개별 근로자의 노동허가는 특정 업종에 따른 기간 내에서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관계당국의 별도 허가 없이 직종을 바꾸어도 무관한 영주권 형태의 허가서를 발부해 줌

마. 사회보장제도

1) 현지인 사회보장

- 높은 소득세와 원유 수출로부터 창출되는 재정자금을 바탕으로 노르웨이 국민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음

2) 출산혜택

- 임신 2개월부터 출산 후 1주일까지 병원진료, 진단, 검사, 치료 등이 모두 무료로 이루어지며 동네보건소(1차 진료소)를 통해 예약시간과 장소 등을 철저히 관리함.
- 출산 3개월 전에 아이용구, 유모차등 구입비로 일시불 NOK35,000 이 지불되며 아동이 3세 미만까지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NOK3,000 지불

- 자녀가 18세 미만의 나이까지는 자녀당 매월 NOK972-2,916를 지불(자녀 수에 따라 차등)
- 출산을 위한 주부 휴직 시에는 8개월간 기존급여 100% (12개월간에는 80%)를 지급

3) 의료비

- 연간 진료비가 NOK1,550 이하는 본인이 부담. 그러나 연간 공공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지출총액이 동 금액을 초과할 경우 영수증을 모아 국영 의료보험에 신청하면 환불해 줌
- 또한 대부분의 현지 공공 의료시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함으로 의료비가 일반 사설병원에 비해 약 2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함.
- 큰 수술이 요구되는 질병이나 장기질병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에서 완전 무료지원. 단, 치과진료(18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 성형수술, 치아교정 등은 보험에서 제외

4) 의무교육

- 중학교까지 9년간 의무교육 실시하여 현재 문맹률이 거의 0%수준임. 또한 의무교육 기간에는 수업료 뿐만 아니라 학습용구(필기구, 노트, 교과서 등)도 모두 무료 제공
- 또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에도 의무교육은 아니나 수업료는 완전 무료임. 다만 교재 및 학습용구 등은 개인부담.

5) 실업수당

- 최저 임금수준(현재 연간 약 800만원 상당)을 초과하는 수입을 가졌던 사람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면 이전 3년간 최고수입에 근거하여 첫해에는 80%, 두번째 해에는 60%, 3번째까지는 50%의 실업수당을 지원
- 단, 노동부나 직업소개소에서 알선하는 직장이나 연수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수당 혜택을 박탈함.

6) 노령연금

- 97년부터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67세로 높여 실시하였으나 노조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 노령연금 수혜나이를 63세로 인하하여 실시 중
- 노령연금 금액은 정년퇴직 전까지 납부한 세금과 수입규모에 비례하여 개개인의 형편에 맞는 연금을 지불
- 평생 동안 직장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도 국민보험에 해당되면 월 70만원 상당의 최저 연금액을 받게 되며 노령연금 최고액 상한은 약 300만원/월 수준임

7) 외국인 사회보장

- 현지에 거주하면서 노르웨이 정부에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외국인도 노르웨이

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다만, 단기 또는 외교관등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주재국에 소득세 등 세금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사회보장 혜택을 공여하지 않음. 그러나 사회보장 중 의료보험은 국가보험으로 운영되므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함.

8) 의료보험

-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도 자발적으로 국가보험에 가입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매달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의료보험료는 연간 총 소득액의 약 14%를 6등분하여 2개월마다 납부하여야 함.
- 의료보험의 문제점으로는 지나친 의료서비스 이용객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 예약과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임.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는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 등을 인근국으로 이송시켜 의료 적체를 해소시키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음.

9) 참고사항

- 현재 오슬로에는 3-4개의 사설 종합병원(치과제외)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Volvat 병원의 경우 연간 성인은 본인Nkr1,200, 배우자 Nkr. 900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진료비의 25%를 할인해줌.
- 현지의 부족한 의료시설 및 의료진으로 대기시간이 길고 부실한 서비스 등으로 말미암아 사설 종합병원의 진료비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및 자국 부유층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설병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현지 납세의무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제 3국의 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현시점에서는 효율적인 방법임.

41. 조세제도

가. 조세제도 개황

1) 세무행정 체계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부과는 국회(Storting)에서 결정하도록 헌법상 규정되어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세금징수는 금지되어 있음. 세무업무는 국회의 위임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무부 산하의 국세청(Tax Directorate)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2002년 3월 1일부로 국세청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각 주(19개)에 지방 국세청(The Fylke Tax Office)을 두고, 그 산하조직을 예전의 436개 지방 세무서(Tax assessment Office)를 99개로 통폐합하였음

그 외에 특별 세무서로는 그룹기업과 다국적기업을 담당하는 The Central Tax Office, 외국인과 외국인 지배법인의 세무를 전담하는 The Central Office for Foreign Tax Affairs (외국인 세무서)를 국세청 직접 산하기관으로 두며, 국내 천연자원 개발세를 전담하는 석유세무서(The Oil Tax Office)를 재무부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세제개황

노르웨이의 조세제도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이 가능하며, 국세와 지방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음. 국가의 총 세수에서의 직간접세 비율은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소득세등 직접세 의존비율이 상당히 높음. 세수의 근원을 살펴보면 소득세비중이 약 44.4%로 가장 높으며 자산세가 13.1%, VAT등 간접세 33.7%, 천연자원개발세 5.8%, 그외 보험등 기타 세입이 약 3%로 구성되어 있음

직접세는 원유, 가스에 대한 세금과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가 약 6:4 비율이며 간접세는 부가세(VAT)가 약 60%를 점유하고 있음.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국세가 87.2%, 지방세 12.2%수준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음.

나. 직접세

1) 소득세

모든 수입원으로부터의 소득이 합산되어 단일체계로 과세되며 대상기간은 회계연도와 같이 1.1-12.31일간의 소득인데, Svalbard제도 및 북부의 Finnmark, Nord-troms 주를 제외하고는 조세특혜가 부여되지 않음.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각 세무서는 개인에게 세금카드(Skattekort)를 발급하며, 연말 정산 시 소득의 증감에 따라 추가징수 혹은 환불이 이루어짐.

평균적으로 기본 소득세 공제액을 제외한 총 소득액의 28%의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개인 및 기업의 경우가 동일함. 소득세가 제외되는 최저점은 연소득이 Nkr80,000 이하 수준임. 고소득자에게는 55.3%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독신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Nkr329,000 초과, 부부의 경우에는 Nkr830,000을 초과시 해당됨.

2) 자산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예금, 자동차와 보트, 유가증권, 가구 등 각종 동산의 평가액을 종합한 금액을 근거로 매년 자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부과함. 자산세의 면제점은 Nkr120,000이하이며, 총자산이 면제점 초과 Nkr540,000이하까지는 0.2%, 초과시에는 0.4%의 국세가 부과됨. 지방세 자산세율은 Nkr120,000 초과시 0.7%임.

3)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의 형태 및 규모에 따라 8 -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면세점은 Nkr20만임. 직계자녀(입양자녀 포함)와 부모간의 상속의 경우에는 Nkr20만 초과 Nkr30만 이하는 8%, Nkr30만 초과시에는 20%의 상속세가 부과됨. 그 외 친지나 타인간의 상속인 경우에는 Nkr20만 초과 Nkr30만 이하는 10%, Nkr30만 초과 시에는 30%의 상속세가 부과됨.

다. 간접세

1) 부가가치세(VAT)

모든 재화와 용역의 거래단계별로 2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수출품, 예술품, 중고차 거래, 신문, 잡지, 재고등에는 VAT가 면제된다. 식료품인 경우에는 2006. 1.1부터 새로운 부가세 13%가 적용됨

그러나 최근 인근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가 EU에 가입함에 따라 VAT가 10%대로 낮아지면서 노르웨이인들의 스웨덴 국경지역에서의 쇼핑이 성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의 부가가치세 및 각종 과세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석유기금의 공공 부문 예산활용을 자제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수년 이내의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2) 특별소비세: Excise Tax

알콜, 탄산음료, 화장품, 초콜릿, 설탕, 자동차, 귀금속 등에 부과되며, 세율은 제품별 및 사양 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음. 동 세금이 노르웨이의 자동차, 주류 등의 가격이 인근국에 비해 상당히 고가로 형성되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임. 최근에는 환경세(Green Tax)가 신설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기타 간접세로 인지세(2.5%), 수입관세, 부동산세(0.2%-0.7%), 등록세, 증권거래세(1.25%, 증권브로커 수수료 기준) 등이 있음.

라. 사회보장세

1) 고용주

고용주 소재지역에 따라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총 급여(각종 Benefit)의 일정액을 지방세로 납부하여야 함. 오슬로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1지역"으로 분류되어 종업원 총 급여의 14.1%를 고용주세로 납부하며, 중소도시 지역(2지역)은 10.6%, 도시근교 지역(3지역)은 6.4%, 농어촌 지역(4지역)은 5.1%로 지역별로 차등 부과되며, 북부 지역인 Nord-Troms 및 Finnmark지역은 면제됨.

또한 피고용인의 연간소득이 사회보장세 부과 최저소득의 16배 이상일 경우에는 12.5%의 추가세가 부과되며, 62세 이상의 피고용인에 대해서는 4%의 고용주세만을 부과함

2) 개인 및 피고용자

개인 및 피고용자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세(의료보험 포함)를 납부해야 하는데, 소득원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음. 일반 근로자 및 농림수산업 부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총소득의 7.8%의 사회보장세가 부과되며, 여타부분 자영업자는 10.7%, 연금생활자는 3%의 사회보장세가 부과됨

42. 외환관리

노르웨이 외환관리는 Exchange Act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외환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 1990년을 기점으로 완전 자유화됨. 따라서 배당금의 송금이나 현지 지사 이익금, 로열티 및 각종 서비스대금의 제 3국 송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조치 없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음.

즉 국제간 환거래나 자금이동 사항은 단지 거래은행에 신고(실제적으로는 은행을 통한 거래 자체가 신고에 같음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이것도 외국 당사자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인 노르웨이인(법인)이 신고할 수도 있음. 그러나 세금문제와 관련된 이익금이나 배당금의 경우에는 세금관련 서류를 첨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부분의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은 이익금이나 배당금중 세금해당 액수만큼을 사내 유보금으로 확보하고 송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

또한 노르웨이 거주인(법인포함)은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누구나 외국환을 소지하거나 시중은행에 외환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외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음.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환거래는 외국환은행이 거주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중앙은행인 Norges Bank에 신고하며, 중앙은행은 필요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현금지참 출입국시에는 노르웨이 화폐와 외환을 포함하여 총 Nkr25,000상당 이상의 금액을 지참하는 출.입국자의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화하고 있음.

43. 이주정착 가이드

가. 생필품 조달

1) 곡류

쌀은 우리 입맛에 맞는 캘리포니아산 자포니카종을 교민이 운영하는 한국식품점에서 20Kg 단위로 구입이 가능하며 일본인 가게에서도 동일한 품질의 쌀 구입이 가능함. 이 밖에 일반 슈퍼에서 품질이 비슷한 이태리산 쌀을 구입할 수 있으며, 슈퍼 및 아시아 마켓에서 태국산 고급품질인 자스민종(Kg당 NOK25) 구입도 가능함.

쌀 이외 보리쌀은 구입이 불가능하나 백두, 팥, 완두콩, 녹두 등은 아시아마켓에서 구입이 가능한 품목이며 찹쌀 역시 태국산 고급종이 판매되고 있음.

2) 야채류

배추, 무, 시금치, 마늘, 파, 당근, 녹두나물 등 우리 식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야채들의 구입은 어디서나 가능한데 오슬로 시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함. 특히 배추는 사시사철 구입이 가능한 편이지만 겨울철인 1월 말 부터 2월 중순까지는 생산이 부족하여 평상시보다 2배 이상 가격이 상승 하기도 함.

3) 양념류

맵고 짠 우리음식에 적당한 양념류로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는 간장과 마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 고유식품인 장류(된장, 고추장)는 현지에서 구입이 어려운 품목이라 할 수 있음. 이밖에 김치 담그기에 필수적인 고춧가루도 찾아볼 수 없는 품목이라 한국에서 직접 조달해야 할 품목들임. 한국식품을 취급하는 현지 교민가게에서 고추장, 고춧가루 등을 조달할 수는 있으나 국내가격의 3-4배 이상이므로 비싼 것은 각오해야 함. 젓갈류 역시 구입이 불가능한 품목인데 김치 담그기 대체용으로 태국산 "생선간장"을 적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는 없음.

4) 조제식품

가장 자주 접하는 라면은 한국교민 가게 1곳에서 직간접으로 수입하여 공급하므로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하지만 가격은 국내에 비해 3배정도 수준임. 소면, 미역, 멸치, 조미료 등 대부분의 조제식품도 구입이 가능하나 가격은 한국내 판매가격과 비교 시 매우 높음

나. 병원 및 약국

1) 병 원

지역별 종합병원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긴급 시 이의 활용가능.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공공병원(1차 진료기관)의 일반의 1명을 지정하여 가정의(Home doctor)로 삼아야 하며, 이들이 1차 진료 후 2차, 3차 진료기관의 진료여부를 결정하여 예약해줌. 일반적으로는 1차 진료소의 추천이 없으면 2차, 3차 진료가 안됨. 사설병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 조건은 없음.

또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유리한데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아니면 평균 2-3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 이러한 불편한 의료시스템으로 최근에는 중산층이상을 겨냥한 사설병원들이 설립되고 있으며 Oslo시에는 Volvat, Oslo Akutten 등 사설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중 Oslo Akutten의 경우 사전예약 없이 항상 방문이 가능하며 비용은 1회 진료 시 Nok550수준으로 높으나 기다리는 시간은 평균 20분내외면 충분함.

2) 약 국

지역별로 약국이 있으나 24시간 하는 약국은 오슬로 시내에 1곳이 있음. 항생제, 항정신성 의약품 등 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인 약품을 제외한 일반 감기약이나 영양제 등 대부분의 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

다. 레저 여건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주택가 인근지에서 언제나 조깅이나 사이클링이 가능하며 자연여건에 따라 여름철 각종 야외운동과 낚시, 사이클링, 겨울철 스키활동이 가능

1) 골프

여름철 야외운동 중 하나로 골프가 가능하며 오슬로 인근지역에만 10여개의 골프장이 있어 5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플레이가 가능함. 다만, 모든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원권을 구입해야만 이용할 수 있음. 최근에는 일부 골프클럽은 회원권 없이 연간사용권을 판매하여 회원권 없이도 골프플레이가 가능함. 매회 골프장 입장권은 클럽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략 주중에는 NOK350, 주말에는 Nok400 내외 수준임

2) 수영

오슬로 시내에는 수영장이 4개 있으며 이중 시 동부지역에 있는 Toeyen 수영장이 실내외 시설을 구비하고 사철 운영 중이므로 티켓을 구입해 입장이 가능함. 오슬로 외곽의 각 지역별로도 중소규모의 수영장들이 있으나 대부분 여름철에만 개장하고 타 계절에는 폐장함

3) 테니스

마을단위로 공영 또는 사설구장이 있어 테니스를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커리큘럼 실습 정도의 기회로 운영될 뿐 일반인들로부터 크게 인기를 얻지는 못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함께 일반인들의 겨울용 실내 스포츠로서 저변인구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4) 낚시

오슬로 피요르드 해안이나 선박에 승선하여 이루어지는 낚시는 여름철 인기 있는 레저 활동 중 하나임. 대상 어종은 대구와 가자미 등이며 여름철에는 고등어가 많이 잡힘. 바다낚시 이외 내륙에서는 강이나 호수낚시도 활발한데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 용품점에서 매년 낚시 라이선스를 구입(16세 이상)해야 하며 낚시 어종이나 크기, 수량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5) 스키

동계시즌의 스키는 노르웨이 국민들의 공통적인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음. 성인들은 주로 산 등성이나 평지의 호수주위 등에 준비되어 있는 장거리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많이 하며, 청소년이나 스키 초보자들은 슬라롬 스키를 즐김. 오슬로 시내에는 홀멘콜렌산에 설치된 스키장이 있으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본격적인 슬라롬 스키는 오슬로에서 약 3시간 내외 외곽지역에 있는 유명스키장들에서 즐길 수 있음(Hemsedal, Trysil, Geilo등)

라. 치안 상태

잘 조성된 사회보장제도, 높은 국민소득수준, 적은 인구로 인해 사회 안전망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적 범죄발생이 매우 낮고 치안은 안전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오슬로 중앙역 동부지역 상가나 주거지역 등에서 강, 절도 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상대적인 우범지역으로 평가되며 주재 외교관이나 상사주재원들은 이 지역을 피해 주거지를 서부지역 등으로 선택하고 있음.

1) 절도

자주 발생되지는 않지만 일반주택가 등에서 좀도둑 수준의 절도행각이 발생되기도 하며, 각 주택 별로 원격 방범시설이 일반화되어 있어 장기 휴가기간 중에도 안전한 편임.

2) 강력범죄

스웨덴 국경을 통해 대량 반입되는 마약으로 인해 마약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자주 발생하며 가끔 살인범죄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인구수에 비례한 범죄발생 건수는 많지 않음. 주로 제3세계 이민인구들이 많이 종사하는 택시기사들이 밤중 여성 승객을 추행하는 택시강도가 가끔 발생되기도 하지만 빈도 면에서 볼 때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님. 인종적 편견이나 정치적 이유로 하여 소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납치,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를 사주하는 단체들이 있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치안당국의 강력한 대처로 이러한 단체들은 자취를 감추었음.

마. 집 구하기

계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오슬로 시내에서 집 구하기가 그리 쉬운 편은 아니나 시야를 오슬로 메트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면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취향에 따라 확보가 다소 용이함. 보다 효율적으로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도착 1개월 전부터 현지 신문의 임차 광고나 유력 복덕방에 수소문을 해 놓는 것이 시간 및 비용절약에 도움이 됨.

오슬로 시내에서는 주로 겨울철 추위와 눈치우기, 여름철 잔디깎기, 난방비 과다부담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가 선호되고 있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연과의 친화나 인터내셔널 스쿨과의 거리 등을 종합 감안하는 경우에는 교외의 단독주택도 검토할 수 있음.

집을 얻기 위해서는 광고나 복덕방을 수소문해 미리 선정된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개인 취향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임차 계약 시 1개월 임차료 선불과 3개월 분의 임차료를 보증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관례임. 보증금은 입주 기간 중 임대인 명의로 은행에 예치되고 이자는 임차인 몫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정산하게 됨.

복덕방을 통해 집이나 아파트를 구하는 경우 복덕방 수수료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오슬로 시내 방3개의 아파트는 보통 Nkr15,000-17,000
- 주택은 오슬로 시내(방 3개): Nkr17,000-20,000
- 가구 및 비품: 대부분의 경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부엌용 비품과 세탁기, 건조기 등은 설치되어 있으며, 여타 가구 및 비품은 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일반적으로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Furnished 된 경우가 많으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엌의 기본 비품만 있는 경우가 많음.

오슬로 교외지역은 시내보다는 지역에 따라 다소 저렴한 곳도 있으나 교외지역이라도 인터내셔널 스쿨 인근지인 Bekkestua지역 등의 임차료는 오슬로 시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오히려 시내보다 비싼 곳도 있음.

바. 외국인 등록증 발급

노르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번호(Personal Number)가 부여된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동 개인번호가 없으면 은행구좌 개설, 전화 신청 등 현지 정착에 필요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따라서 현지 도착 후 가장 우선적으로 여권(비자 포함)을 지참하여 행정구역상의 Registration Office(경찰서 민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 체류등록을 하여야 하며 통상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1-2주가 소요됨

그러나 외국공관 직원 등 현지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번호를 Registration Office에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은행구좌를 개설코자 하는 현지 은행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3주가 소요됨

사. 구좌개설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사진 2매를 가지고 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구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됨. 그러나 개인번호가 없는 비납세자는 여권을 가지고 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국세청 소관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여 제출하면 약 3주 후 "국세청 등록번호"를 통보해 줌. 동 번호가 부여되었다는 은행의 통지를 받으면 사진 2매, 여권사본을 가지고 구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은행에서 정한 비밀번호를 신청인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고 동 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구좌를 개설했던 지점에 가면 신용카드를 교부함

노르웨이의 신용카드 사용관행은 일정기간 동안 신용을 공여하는 일반적인 신용카드보다는 사용 당일 즉시 해당 구좌로부터 사용금액이 인출되는 일종의 직불카드와 같은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신용카드 수수료로 매달 일정액을 구좌에서 공제하고 있음

아. 전화신청

노르웨이의 통신회사(시내외)는 최근 들어 민간통신회사의 참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국영 Telenor사의 독점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전화신청서를 작성 Telenor사에 송부하면 설치 일자를 문서로 회신해 주며 전화요금은 보통 월별 혹은 분기별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임

전화 신청시 일반 아날로그 전화와 ISDN선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ISDN신청 시 2개 회선을 사용할 수 있음. ISDN박스는 Telenor사 소유로서 최초 설치 시 Nkr990를 내고(특판 시에는 50%정도 세일) 사용하다가 전화를 취소하면 동 사에서 수거해 감. ISDN박스를 전화국 직원이 달아주면 Nkr850의 설치비를 지불해야 하므로 가구주가 직접 설치하는 것도 비용절감의 한 방법임

ISDN사용시 통화료는 아날로그 선보다 시설사용료가 분기당 Nkr690으로 비싼 것이 흠이지만 2개 회선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아날로그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 ISDN용 전화기는 보통 Nkr700-1,900까지 하는데 가끔 특정 제품을 염가로 판매함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최근에는 노르웨이도 ADSL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전화선을 신청하여야 함. 따라서 ISDN 과 ADSL중 어느 것이 자신에게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따져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자. 비품구입

노르웨이 국내에서 가구나 비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비싼 것이 흠이지만 품질에 따라 다양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음. 북구지역에는 IKEA의 판매 센터가 여러 곳에 있으므로 원목 조립가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비품을 원스톱 구매가 가능하며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임

또한 불요불급한 비품의 경우에는 계절별로 시행 되는 세일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임.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와 신년시즌이 끝나는 1월 중순부터 세일을 시작하여 부활절까지 계속되므로 이 기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함. 특히 현지의 가장 일반적인 겨울 스포츠인 스키의 경우 비수기(4-9월) 기간중의 세일을 활용할 경우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음.

차. 인터내셔널 스쿨

1) 학교명: The Oslo International School (OIS)

- 주소 및 연락처: P.O. Box 53, 1318 Bekkestua, Norway
- Tel: (47)67532303
- Fax: (47)67591015,
- E-Mail: oslo.is@online.no
- 위치: 오슬로 서쪽 외곽의 Bekkestua 에 소재(시내중심가에서 12Km정도)
- 입학 시 필요한 서류
 - Completed Application Form
 - Completed Child Data Form
 - Completed Language Information Form
 - Completed Medical Information Form
 - Completed Financial Agreement with OIS
 - Copy of birth certificate(여권사본으로 대체가능)
 - Passport size Photograph
 - Most recent school report

2) 2005/2006학기 입학금 및 수업료 현황

- 입학금: Nkr 800
- 등록금: Nkr 10,000

수업료

	회사지원 50% 이상 시	자비 부담 시
11/13학년 (고등학교)	연간 Nkr 135,000	Nkr 112,000
1/10학년 (유치/중3)	연간 Nkr 135,000	Nkr 60,000
Kindergarten	연간 Nkr 60,000	Nkr 30,000

3) 스쿨버스

- 운영 현황 : 10개 노선 운행
- 이용요금(년간) : 편도- Nkr 7,500 왕복 - Nkr 13,000
- 참고사항 : 지하철 역에서 멀지 않아 고학년들은 지하철 주로 이용

4) 방과후 학생 들보는 서비스

- 대상 학생 : 1 - 6학년생
- 시간 : 월-목 : 15:00-17:00, 금요일 14:15 - 16:30
- 비용 : Nkr 1,050/월

5) 기타 참고사항

- 현재 오슬로 지역에는 영국계인 IS가 유일한 국제학교임
- 현재 학생수가 500명 수준으로 많지 않아 입학에는 별 어려움이 없음.
- 따라서 교육비 납부방법(일시불, 분기납 혹은 월납등)이나 입학서류 구비 등 제반사항에 대해 학교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카. 현지 학교 - 영어사용 학교

- Frogner International Pre-school
 - 오슬로 시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영어 가능 유치원
 - 수업일은 매주 월-금요일의 09:00-15:00
 - 연간 수업료는 NOK3,750
 - 통학을 위한 셔틀버스도 운영되며, 왕복은 월 NOK800, 편도는 월 NOK400
- IB과정(고등학교 2-3년 과정)
 - Berg Videregoende Skole
 - Nesbru Videregoende Skole
 - Lillestrom Videregoende Skole
- 참고사항
 - 이들 현지 학교들은 대학교 진학준비를 위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도 입학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영어구사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매년 3월1일까지 재학 증명서와 내신성적표 등을 구비하여 입학을 신청해야 하는데 연간 학비 수준은 대략 NOK 5,000내외로 부담은 크지 않음.

타. 현지 학교 - 현지어 사용학교

노르웨이 학교는 지역별로 설립 운영되기 때문에 주거지역 소재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입학을 신청하면 됨. 특히 노르웨이는 6세부터 10년간(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임으로 학비 및 교재비는 무료임. 또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경우에도 학비는 무료이며, 교재비 및 기타 부대비용만 부담하면 됨.

파. 자동차구입

1) 자동차구입

자동차구입은 신차의 경우는 자동차브랜드 에이전트 사에서 하고 중고차는 중고차시장(Ensjozoom 지역 내 위치)에서 직접 보고 고를 수 있거나 인터넷 시장(www.finn.no)을 통해 구매할 수 있음. 노르웨이 자동차는 수입 시 관세는 없으나 등록세 100%, 부가가치세 25%가 부과되어 현지 판매가격은 굉장히 비쌌. 한국산 소나타 2.0의 경우 현지 신차구입가격이 50,000불 정도 되며 3년 중고가의 경우도 약 25,000불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음.

2) 자동차등록

자동차 등록처는 Ostre Aker Vei50에 있는 Trafikkstasjoner(Traffic Station: 전화: 81522000)이며 등록비는 2000cc기준 NOK6,800(약US\$1,046)이며 차량의 수와 무게에 따라 달라짐. 등록 시 제출서류는 자동차구입시 에이전트 사에서 대행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음. 자동차 등록 신청 후 2-5일 후에 Vognkort(자동차등록증)를 집으로 우송해줌